

I. 이 책은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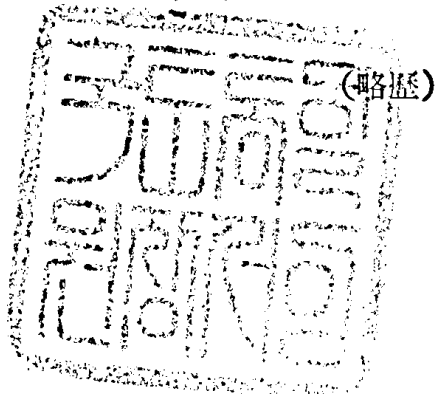
— 共產圈憲法研究 —

北韓憲法과 共產諸國의 憲法과의 異同에 關한 研究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titutions of North
Korea and of other Communist Countries)

研究執筆責任

金 哲 洙



(略歷)

서울大 法大 卒 (1956年)

西獨 문헌大 法學部에서 研究 (1956~1960)

美國 하바드大 法科大學院에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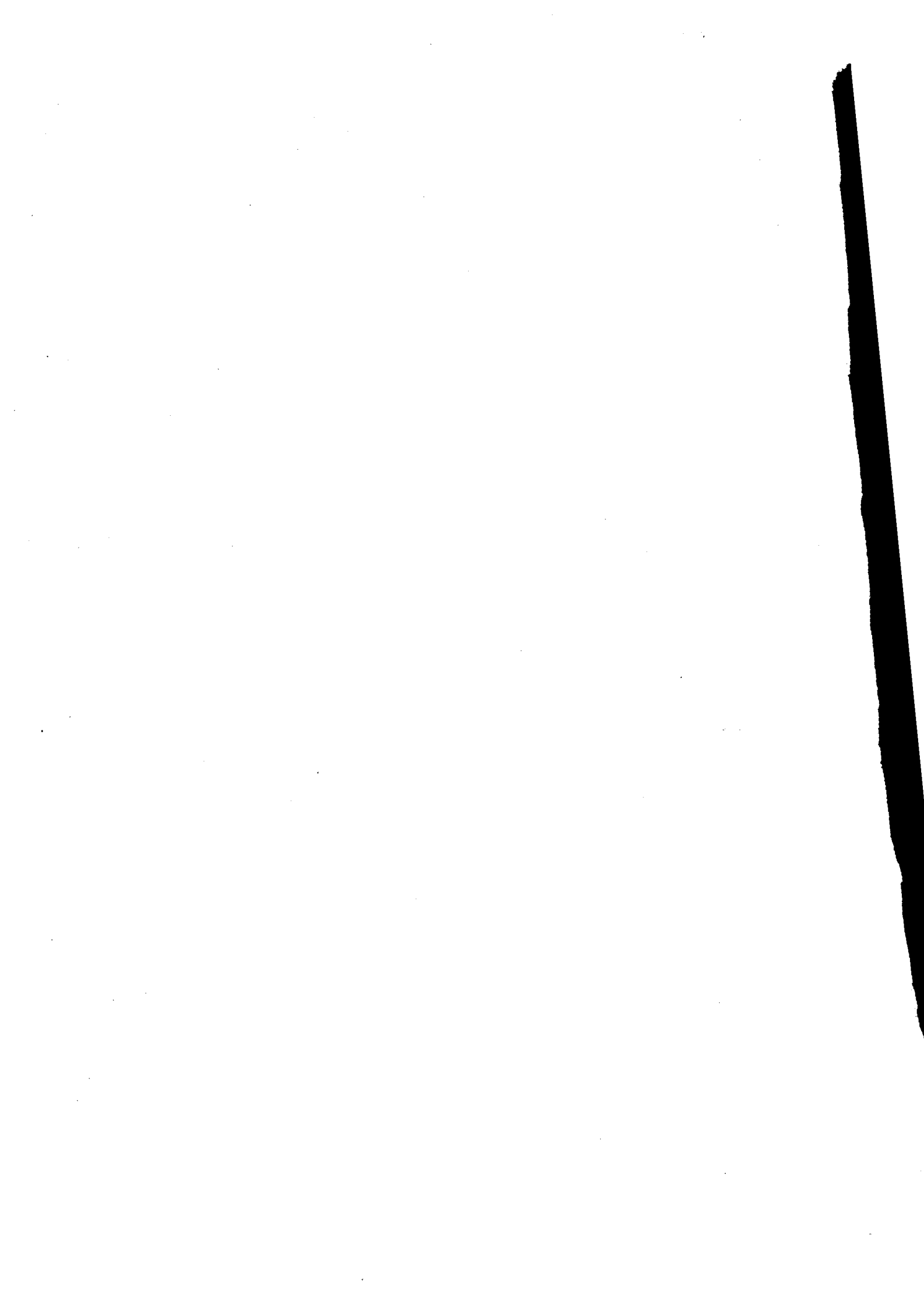
(1966~1967)

現 서울大 法大 教授 (1962년 부터)

刊行責任

申 英 俊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北韓憲法과 共產諸國憲法과의 異同에 관한 研究

要 約

1. 北韓憲法の 共產諸國憲法上の 地位

共產主義憲法은 1917年の 소聯憲法에서 비롯하여 第2次大戰後의 人民民主主義憲法을 거쳐 社會主義憲法으로 發展하고 있다. 北韓의 1972年憲法은 社會主義憲法이라고 宣傳하고 있다.

社會主義憲法에는 開發途上에 있는 社會主義憲法과 發展된 社會主義憲法이 있다. 前者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中共의 1978年憲法이 있고 後者の 代表的인 것으로는 1977年の 소聯憲法을 들 수 있다. 發展된 社會主義憲法은 모든 國民의 幸福이 確保되고 階級과 社會層이 接近된 것으로 國家生活에의 勤勞者의 積極的인 參加의 市民의 實質的權利 및 自由가 確保되어 있는 社會의 憲法을 말한다. 政治的形態로는 全人民國家를 표방한다. 開發途上의 社會主義國家 내지는 初步的으로 繁榮한 社會主義國家의 憲法은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獨裁를 認定하고 있으며 市民의 自由權과 生存權保障이 아직도 發達되지 않는 憲法을 말한다.

1972年の 北韓憲法은 아직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維持하며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強調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開發途上의 社會主義憲法임을 알 수 있다.

2. 北韓憲法の 總綱規定과 共產諸國憲法の 總綱規定과의 異同

北韓憲法은 政治條項에서 勤勞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에게 主權이 있음을 強調하며 勤勞人民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에 權力을 集中시키고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中央集權制原則과 議會政府制度는 世界各國의 共產主義憲法이 採択하고 있는 共通的인 現象이다. 다만 發達된 社會主義憲法인 소聯憲法만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止揚하고 全人民國家를 표방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原則을 採択하고 社會主義的適法性을 強調하고 있는데 이는 社會主義憲法들의 共通的인 特色이라고 하겠다.

經濟條項에 있어서는 北韓憲法은 私有財産制度를 否認하고 國家所有와 協同團體所有를 原則으로 하고 協同團體의 所有도 全人民의 所有로 轉換시킬 것을 強調하고 있다. 또 勞賃階級の 差別과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등을 없앨 것을 公約하고 있다.

中共憲法은 生産手段所有制로서 社會主義의 全人民의 所有制와 社會主義의 勤勞大衆에 의한 集團所有制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소聯憲法도 國家的財産과 協同組合的財産으로 나누어 이를 不可侵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소聯憲法이나 中共憲法, 東獨憲法등이 環境保護를 規定하고 있으나 北韓憲法에는 이에 관한 規定이 없다.

北韓은 經濟計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또 租稅制度를 廢止하고 있다. 租稅制度의 廢止는 北韓을 除外한 어떤 憲法에서도 規定되지 않고 있다. 北韓의 租稅制度의 廢止는 宣傳口號일 可能性

이 많다.

文化政策에 있어서도 「共產主義의 새人間」을 만드는 文化政策을 強調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各人の 自由로운 發達이 万人의 自由로운 發達の 條件이다」라는 共產主義的理想을 내걸고 있다. 소聯에 있어서도 道德的教育이 強調되고 있다. 中共憲法은 마르크스主義, 레닌主義, 毛沢東思想의 指導的地位를 強調하면서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方針을 實行하고 藝術의 發展과 科學進歩를 促進하고 社會主義文化의 繁榮을 促進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3. 北韓憲法の 基本權規定과 共產諸國憲法の 基本權規定과의 異同

北韓憲法の 基本權規定은 比較的 상세하다.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고 하고 「公民은 能力에 따라 일하며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는 原則을 들고 있다. 權利의 保障과 아울러 義務가 많이 規定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遵法義務, 集團主義精神發揚義務, 共同財產尊重義務들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權條項은 社會主義憲法の 規定들을 모방한 것이다.

1978年 中共憲法도 이 部類에 머물고 있다.

소聯憲法은 이에서 한발 앞서 住宅에 대한 權利, 最低賃金이상의 勞賃을 받을 權利, 週41時間以下 勞動의 設定, 醫療保護의 權利등을 規定하여 市民의 權利擴大를 구가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憲法도 住宅에 대한 權利, 生命에의 權利, 社會的保護에 관한 權利, 環境權,

週 42 時間勞動, 社會保障權등을 規定하고 있다.

4. 北韓憲法の 統治組織條項과 共產諸國憲法の 統治組織條項과의 異同

北韓의 新憲法은 最高人民會議과 그 常設委員會를 두고 있으나 그 權限은 弱化되고 있으며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였고 內閣의 名稱을 政務院으로 하되 그 權限을 縮少시켰다.

北韓主席은 1954 年の 中共憲法の 모방이다. 1978 年の 中共憲法에는 共產黨主席만 두고 共和國主席은 두지 않고 있다. 北韓의 主席은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로서 全般的武力의 最高司令官이요,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서 國家의 一切의 武力을 指揮, 統率한다. 中共에 있어서는 中國共產黨主席이 武力統帥權을 가지고 있다.

主席制度는 東歐共產國家의 大統領制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大統領이라던가 越南의 大統領, 1968 年 東獨의 國家評議會議長制度를 모방한 것 같다. 1974 年 憲法에서 東獨은 國家評議會議長의 職位를 弱化하고 있으며 中共에서도 1975 年 憲法과 1978 年 憲法에서는 主席制度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金日成 1 人崇拜를 위한 主席制度는 金日成과 함께 사라지고 共產主義憲法の 共通的인 特色인 集團的代表制가 實施될 것으로 보인다.

中央人民委員會制度는 1968 年 東獨憲法の 國家評議會制度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制度가 中共憲法에서는 廢止되고야 말았

다. 따라서 앞으로 이 制度가 繼續 存続될 것인지도 疑問이다.

5. 結 語

北韓憲法은 南北對話期에 있어서 社會主義建設이 이루어졌음을 宣傳하기 위한 宣傳文書의 役割을 했다. 그러나 未開發 社會主義 國家로서의 憲法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中共憲法과 가까우며 소聯의 開發된 社會主義憲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金日成死後에는 金日成獨裁의 性格을 벗어나 北勞黨의 優越的地位가 憲法에 明示된 것으로 보이며 發達된 社會主義段階로 접어들면 소聯을 비롯한 東歐憲法과 같이 基本權保障規範이 追加된 것으로 보인다.



目 次

要 約

第 1 節 北韓憲法の 共產圏憲法上の 地位	3
第 2 節 北韓憲法の 総綱規定과 共產諸国憲法の 総綱規定과의 異同	13
第 3 節 北韓憲法の 基本権条項과 共產諸国憲法の 基本権条項과의 異同	47
第 4 節 北韓憲法の 統治組織条項과 共產諸国憲法の 統治組織条項과의 異同	60
第 5 節 結 論	86



第1節 北韓憲法の 共產諸國憲法上の 地位

(1) 共產主義憲法の 生成과 發展

共產國憲法은 1917年 소聯憲法에서 비롯하여 第2次大戰後의 人民民主主義憲法과 最近의 社會主義憲法을 包括하고 있다. 1)

이들 共產國家의 憲法은 그동안 많은 制定과 改正을 거듭하였는데 그 時代的 區分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8.7.10 러시아 共

- | | | |
|------------|-------------------------|---------|
| 1918. 7.10 | 러시아共和國憲法 | (共和國憲法) |
| 1924.11.26 | 蒙古人民共和國憲法 | |
| 1925. 5. 1 | 러시아共和國憲法 | |
| 1936.12. 5 |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憲法 (스탈린憲法) | |
| 1940. 6.30 | 몽고人民共和國憲法 | |
| 1946. 1.31 | 유고슬라비아聯邦人民共和國憲法 | |
| 1946. 3.14 | 알바니아人民共和國憲法 | |
| 1946.11. 8 | 베트남民主共和國憲法 | |
| 1947.12. 4 | 불가리아人民共和國憲法 | |
| 1948. 4.13 | 루우마니아人民共和國憲法 | |
| 1948. 5. 9 | 체코슬로바키아共和國憲法 | |
| 1948. 9. 8 | 北韓人民共和國憲法 | |
| 1949. 5.30 | 獨逸民主共和國憲法 | |
| 1949. 8.18 | 헝가리人民共和國憲法 | |
| 1952. 7.22 | 폴란드人民共和國憲法 | |

1953. 1. 13 유고슬라비아 聯邦人民共和國憲法
1954. 9. 20 中華人民共和國憲法
1959. 2. 7 큐바共和國憲法
1959. 12. 31 베트남民主共和國憲法
1960. 7. 6 몽고人民共和國憲法
1960. 7. 11 체코슬로바키아社會主義共和國憲法
1963. 4. 7 유고슬라비아社會主義聯邦共和國憲法
1965. 8. 22 루우마니아社會主義共和國憲法
1968. 4. 6 獨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 1970 예멘憲法
1971. 5. 16 불가리아人民共和國憲法
1972. 헝가리人民共和國憲法
1972. 12. 27北韓社會主義憲法
1974. 2. 21 유고슬라비아社會主義聯邦共和國憲法
1974. 10. 7 獨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1975. 1. 17 中華人民共和國憲法
- 1976 알바니아人民共和國憲法
1976. 2. 폴란드人民共和國憲法
1977. 10. 7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憲法
1978. 3. 5 中華人民共和國憲法

이들 共產主義憲法들은 ①人民民主主義憲法과 ②社會主義憲法 ③發
達된 共產主義憲法으로 成長함을 알 수 있다.

(2) 共産主義憲法の 類型

共産主義憲法은 그 成長段階에 따라 ①人民民主主義憲法과 ②社會主義憲法 ③發達된 共産主義憲法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憲法の 特性에 대해서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人民民主主義憲法

이 憲法은 過渡期憲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의 移行段階 즉 過渡期에 있어서의 社會・經濟體制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것도 三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㉔ 소聯邦의 NEP 期에 있어서 所謂 Lenin 憲法과 ㉕ 東歐人民民主主義憲法 ㉖ 東北아세아人民民主主義憲法이다.

人民民主主義憲法들은 아직까지 社會主義의 領域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서 憲法上에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을 明白히 規定하고 있다. 이 段階에 있어서의 憲法들은 各各 社會的 歷史的基盤의 相違에 따라 所有權制度나 政治參與制度에 있어 서로 다른 것이 特色이다. 이러한 憲法들은 勞動者階級の 帝國主義殖民地 支配體制를 打倒하고 國家權力을 장악하여 새로운 政府를 樹立했다는 既定事實에 立脚하여 그 階級性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② 社會主義憲法

이 憲法은 資本主義制度를 完全히 廢止하고 勞動者階級 자신들이 國家의 全權力을 장악하고 社會主義國家를 形成했다는 주장에 立脚하여 이 制度를 確固히 維持하기 위하여 만든것이라 한다.

이 憲法下에서는 既存의 資本主義憲法과 國家를 完全히 廢止하고 生産手段을 勤勞하는 人民大衆의 集結體인 國家의 公有로 하고 全 人民的經濟制度를 確立했다는 데에 特色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憲法은 人民民主主義憲法의 發展形態라고 할 수 있다.

1960年代以後 人民民主主義憲法이 社會主義憲法으로 달바꿈 하고 있다. 最初의 社會主義憲法은 1936年の Stalin 憲法이었으며 1960年の 체코 憲法 1963年の 유고 憲法, 1965年の 루마니아 憲法, 1968年の 東獨 憲法, 1971年の 불가리아 憲法, 1972年の 헝가리아 憲法 1972年の 北韓 憲法, 1975年の 中共 憲法, 1978年の 中共 憲法들이 이에 屬한다고 하겠다. 2)

③ 發達된 社會主義憲法

이 憲法은 發達된 社會主義國家를 形成하고 그 成果를 確實히 하기 위하여 만든 憲法이다. 이러한 發達한 社會主義 (Developed Socialism) 社會에서는 모든 階級 및 社會層이 接近하고 法律的 實質的平等이 確保되었으며 各人の 幸福에 대한 萬人의 配慮 및 萬人의 幸福에 대한 各人の 配慮가 社會生活의 規範이 되어있는 참다운 民主主義의 社會라고 한다. 3)

이 社會의 政治시스템은 社會的事業全體의 效果的인 管理, 國家生活에의 勤勞者의 보다 더한 積極的인 參加 및 市民의 實質的權利 및 自由와 市民의 義務 및 社會에 대한 責任과의 結合이 保障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發達된 社會主義憲法으로는 1974年の 東獨 憲法과 1977年

의 소聯憲法등을 들 수 있다. 4) 5)

(3)北韓憲法の 共產主義憲法上 地位

1948年の北韓憲法은 人民民主主義憲法이었다. 그런데 北韓도 1972年12月27日의 新憲法制定으로 社會主義憲法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社會主義憲法の 特色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止揚하고 全國民에게 政治參與의 길을 開放하며 經濟的으로는 生産手段에 對한 私有를 禁止하고 國公有로만 하고 個人所有權을 極히 制限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憲法은 「各人은 그 能力에 따라 그 勞動에 따라」라는 社會主義原則에 立脚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의 72年憲法은 名目上으로는 社會主義國家임을 표방하고 社會主義憲法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口號에만 그치고 實質的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獨裁가 維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프롤레타리아獨裁로 統治하며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한다」(第10條)라든가 「國家는 内外 敵對分子들의 破壞策動으로 부터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며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한다」(第11條)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明白하다. 北韓憲法の 文面에서 보면 아직도 모든 人民이 勞動階級으로 되지 않았음을 실토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이 소聯의 1977年(브레즈네프)憲法과 다른

点이라고 하겠다.

브레즈네프憲法은 全人民國家를 표방하고 階級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6) 憲法前文은 소聯國家의 發展過程을 說明한 뒤 「소聯邦의 勤勞者는 그 創造的活動을 繼續하여 國家의 急速하고 全面的인 發展 社會主義體制의 充實을 保障하였다. 勞動者階級 코르호즈農民階級 및 人民的인텔리겐차의 同盟 및 소聯邦의 諸民族間의 友好가 強化되었다. 勞動者階級이 主導的勢力인 소비에트社會의 社會的 政治的 및 思想的統一性이 形成되었다. 소비에트國家는 프롤레타리아트 獨裁의 諸課題를 達成하는 것에 의하여 全人民國家로 되었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第1條에서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國家의 勞動者 農民 및 인텔리겐차 및 모든 民族의 勞動者의 意思와 利益을 表現하는 社會主義的 全人民國家이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聯邦에 있어서의 모든 權力은 人民에 屬한다고 하고 있다. (第2條1項) 나아가 前文은 「社會主義的 全人民國家의 主要한 課題는 共產主義의 物質的 技術的基礎의 建設, 社會主義的인 社會 諸關係의 充實 및 그 共產主義的인 社會諸關係에의 改造, 共產主義社會에 適合하는 人間의 教育, 勤勞者의 生活의 物質的 및 文化的水準의 向上國家의 安全保障, 平和의 強化 및 國際協力の 發展의 推進이다」고 하고 있다.

1978年의 中共憲法은 소聯의 全人民國家理論이 부르조아階級獨裁 國家의 理論이라고 排擊하면서 (소聯官僚獨占 부르조아階級の 搾取

独裁社会 帝國主義政策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⁷⁾ 프롤레타리아 階級独裁의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즉 中共憲法 第1条는 「中華人民共和國은 勞動者階級이 指導하는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프롤레타리아階級独裁의 社會主義國家이다」고 (第1条) 強調하되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力은 人民에 屬한다. 人民이 國家權力을 行使하는 機關은 全國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이다」고 하고 있다. (第3条).

이러한 差異는 開發途上의 社會主義國家와 開發된 社會主義 (Developed Socialism) 國家와의 差異라고도 보겠다. 소聯憲法은 前文에서 「소聯邦에는 發達한 社會主義社會가 建設되었다. 社會主義는 그 自身의 基礎에 따라서 發展하고 있는 이 段階에 있어서는 새로운 體制의 創造力, 社會主義의 生活樣式의 優位性이 점점 더 完全히 明確하게 되며 勤勞者는 偉大한 革命的獲得物의 果實을 점점 더 広範히 享受하고 있다」 「이것은 強力한 生産力 先進的 科學 및 文化가 創造되어 人民의 福祉가 끊임없이 增進하고 個人의 全面的 發達에 따라 보다 恩沢된 條件이 形成되고 있는 社會이다. 이것은 成熟한 社會主義的인 社會諸關係의 社會이며 이 社會에는 모든 階級 및 社會層의 接近 모든 民族의 法律的 및 實質的平等, 그들의 兄弟的協力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새로운 歷史的 共同體, 즉 소비에트人民이 形成되었다. ……이것은 各人의 幸福에 대한 萬人의 配慮 및 萬人의 幸福에 대한 各人의 配慮가 社會生活의 規範이 되어 있는 社會이다. ……이것은 참다운 民主主義의

사회이며 그 사회의 정치시스템은 사회적事業全体的 效果的인 管理
國家生活에의 勤勞者의 보다 더한 積極的인 參加 및 市民의 實質
的權利 및 自由와 市民의 義務 및 社會에 대한 責任과의 結合을
保障하고 있다. 發達한 社會主義社會는 共產主義에의 道에 있어
서의 合法則的인 段階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아직도 發展된 社會主義段階에는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中共의 1978年憲法은 「프롤레타리아階級獨裁下에 있어서의
繼續革命을 堅持하고 階級鬭爭·生産鬭爭·科學實驗의 三大革命運動을
展開하여 今世紀中에 우리나라를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이 現代
化한 偉大한 社會主義強國으로 建設한다」고 하고 있다.

또 中共이 아직도 初步的으로 繁榮한 社會主義國家로 되어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前文 第2項)

北韓憲法도 初步的으로 繁榮한 社會主義國家이기 때문에 그 憲法
類型은 社會主義憲法의 類型에 屬한다고 볼 것이다. 그것은 「社
會主義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친다」(제 13조)는 規定에서 아직도
社會主義憲法의 段階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4) 社會主義憲法으로서의 北韓憲法의 模倣性

北韓의 1972年 所謂 社會主義憲法은 獨創的인 憲法임을 強調
하고 있으나 事實上에 있어서는 東歐등의 社會主義憲法을 模倣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8) 北韓憲法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第4條)고 하여 主体思想을 내세우고 있으나 憲法은 獨創的인 것이 되지 못하고 模倣憲法인 것이 特色이다.

北韓憲法은 1968年의 東獨憲法⁹⁾과 1963年의 유고슬라비아憲法과 1954年의 中共憲法의 模倣이라고 하겠다. 北韓의 新憲法은 旧憲法과는 編制를 달리하고 있는데 第1章 政治, 第2章 經濟, 第3章 文化 등으로 区分하여 基本原則을 羅列하고 있는데 이것은 1968年의 東獨憲法과 1963年의 유고슬라비아憲法 등의 編制를 模倣한 것으로 보인다. 유고슬라비아憲法은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中에서는 가장 잘 整備되어 있고 또 美辭麗句가 가장 많은 綱領的 憲法이다.¹⁰⁾ 東獨憲法도 社會主義國家의 憲法으로서는 體制面에 優秀性을 보이고 있다. 北韓憲法起草者들이 過去의 스탈린憲法模倣에서 中共이며 東獨等 憲法을 模倣하게 된 것은 재미있는 現象이라고 하겠다.

統治構造面에 있어서도 새로히 主席制度를 新設하고 있는데 이것은 中共과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越盟 등의 主席 또는 大統領制를 模倣한 것이라고 하겠다.

共產主義憲法은 義會政府制라고 하여 最高會議 또는 人民代表者大會에 모든 國家權力이 集中되어 있는 것이 原則인데 北韓의 新憲法은 最高人民會議에 權力을 集中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實質的으로는 主席에게 國家權力을 集中시켜 1人獨裁를 可能하게 하기

위한 策略이라고 하겠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大統領을 두되 一般的으로는 三選을 禁하고 있다. 다만 Tito를 終身的인 大統領으로 하기 위하여 大統領三選禁止條項을 適用시키지 않고 있는데 北韓憲法은 一般的으로 再選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繼續 在任하게 할 수 있도록 三選禁止條項을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事實上에 있어 金日成의 永久執權을 確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党的 優位보다는 金日成主席 個人的 優位를 規定했다고 보아 獨創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2節 北韓憲法の 總綱規定과 共產諸國 憲法の 總綱規定과의 異同

(1) 政治條項에 있어서의 異同¹¹⁾

共產諸國憲法은 政治條項에 있어서 ① 프롤레타리아 獨裁主義 ② 權力集中主義 ③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④ 社會主義的 適法性 등을 規定하고 있다.

(가) 프롤레타리아 獨裁主義

共產主義憲法은 原則적으로 國家權力은 勤勞者에게 있다고 하고 이들이 選出한 代議員을 구성된 最高會議가 모든 國家權力을 行使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主義를 採択하고 있다.¹²⁾

北韓憲法도 다른 共產主義憲法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獨裁主義와 權力集中主義를 採択하고 있다.北韓憲法은 政治條項에서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에게 主權이 있음을 強調하고 (第7條) 勤勞人民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에 權力을 集中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勤勞人民을 自己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와 地方各級 人民會議를 통하여 主權을 行使한다」고 하고 이들 各級主權機關은 國民의 選舉에 의하여 選出되어 各級主權機關의 代議員은 自己事業에 對하여 選舉者들 앞에 責任을 진다」(第7條, 第8條)고 하고 있다.¹³⁾

中共憲法은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力은 人民에 屬한다. 人

민이 國家權力을 行使하는 機關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이다」(第3條)고 하고 있다. 이것은 人民主權主義를 宣한 것이다. 13)

소聯憲法은 「소聯邦에 있어서의 全權力은 人民에 屬한다. 人民은 소聯邦의 基礎를 이루는 人民代議員「소비에트」를 通하여 國家權力을 實現한다」고 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아직 까지도 人民民主主義憲法에 있어서와 같이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위하여 勤勞人民에게만 主權이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1978年 中共憲法은 人民主權을 強調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7年의 소聯憲法은 全人民國家의 理論을 내세워 全人民主權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나) 共産黨의 優越

共産主義憲法의 政治系項에서는 共産黨의 地位에 관해서 規定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15) 그런데 北韓憲法에는 勞動黨의 地位에 관해서는 明確히 規定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한 特色이다. 第4條에서는 主体思想을 活動指針이라고 하면서 勞動黨에 言及하고 있다. 즉「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指針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1968年의 東獨憲法은 民主獨逸民族戰線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 16) 憲法第3條는 「人民의 모든 權의 結合은 民主獨逸民族戰線에서 그 組織된 表現을 發見할 수 있다. 이民主獨逸

의 民族戰線에는 諸政党和 諸大衆団体는 社會主義社會의 發展을 위한 共同行動을 위하여 人民의 모든 勢力을 結集한다」고 하여 社會主義統一黨을 偽裝하고 있다.

1974年憲法에서는 民族戰線의 名稱을 獨逸民主共和國의 民族戰線으로 改稱하고 있다. 17)

1978年 中共憲法은 中國共產黨의 指導를 強調하고 있으며 또 第2條에서 共產黨의 地位를 規定하고 있다. 中國共產黨은 全中共人民의 指導的 中核이다. 勞動者階級은 自己의 前衛인 中國共產黨을 통하여 國家에 의한 指導를 實現한다. 中華人民共和國의 指導的 思想은 맑스·레닌主義 레닌主義 毛沢東思想이다」고 하고 있다.

1977年 소聯憲法도 第6條에서 共產黨의 地位를 規定하고 있다. 「소聯邦共產黨은 소비에트社會의 指導的 및 嚮導的인 힘이며 그 政治시스템, 國家組織 및 社會團體의 中核이다. 소聯邦共產黨은 人民을 위하여 存在하고 人民에 奉仕한다.

맑스·레닌主義의 學說로써 武裝한 共產黨은 社會發展의 綜合的展望 및 소聯邦의 內外政策의 路線을 定하고, 소비에트 人民의 偉大한 創造的活動을 指導하고, 共產主義의 勝利를 指向하는 소비에트 人民의 싸움에 計劃適合的이며 科學的인 根拠를 가진 性格을 부여한다. 모든 黨組織은 소聯邦憲法의 틀안에서 活動한다」고 하고 있다.

北韓憲法이 他共產諸國憲法과는 달리 共產黨의 優越的 地位를 強調하지 않는 理由는 大韓民國國民을 意識한 것으로 보이며 金日成의 唯一思想에 의하여 共產黨의 地位가 後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또 東歐憲法과는 달리 統一戰線에 관하여 規定하지 않고 있다.

(나)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北韓憲法은 다른 共產主義憲法과 마찬가지로 國家機關을 民主主義中央集權制 原則에 따라 組織하며 運營하도록 하고 있다.

(第9條)

北韓에서의 說明에 따르면 民主主義中央集權制란 「上부의 命令과 下부의 創意性을 結合」시키는 것이라고 하고¹⁹⁾ 「民主主義中央集權制는 勞動階級の 黨과 國家機關의 組織과 活動의 基本原則이다. 黨과 國家의 中央集權的指導는 廣範한 大衆의 意思에 基礎하고 있으며 人民大衆의 智慧와 地方의 創發性은 中央의 統一的이며 計劃的인 指導에 依해서만 圓滿히 發揚될 수 있다」고 한다.²⁰⁾

1968年의 東獨憲法은 第2條에서 「모든 政治的 權力은 勤勞者에 依하여 行使된다」고 했고 1974年憲法에서는 「모든 政治的權力은 都市와 農村에 있는 勤勞者에 依하여 行使된다」고 하여 勤勞者에게 主權이 있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또 第47條에서 民主的集中主義의 根柢下에 實現되는 勤勞人民의 主權은 國家組織의 主導的原則이다」고하여 民主的集中主義를 規定하고 있다.²¹⁾ 이 民主集中主義란 全体國家에 있어서 马克思·레닌政党的 優位性을 確保하는 構造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²²⁾

1978年 中共憲法도 前文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獨裁를 強調하고 第1條에서 이를 반복하고 第3條에서 「모든 權力은 人民에 屬한

다」고 하면서 「全國人民代表大會 및 기타의 國家機關은 一律적으로 民主集中制를 實行한다」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第3條에서 소비에트 國家의 組織과 活動은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의 諸原則, 即 上下의 모든 國家權力機關의 選舉制, 이러한 機關의 人民에 대한 報告의 義務制 上級機關의 決定에 대한 下級機關의 拘束의 原則에 의해 이루어진다.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統一의 指導와 現地의 創意 및 創造의 積極性 委任된 業務에 대한 個個의 國家機關과 公務員의 責任에 依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점에서 民主集中制 내지는 權力의 中央集權制, 權力統合制에 立脚한 點에서는 모든 共產主義 國家의 憲法이 同一하다.²³⁾

(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또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

共產主義憲法은 一般적으로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²⁴⁾ 1968年의 東獨憲法은 6條2項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諸原則에 따라서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聯邦 및 其他 社會主義諸國과의 全面的인 協力과 友好를 育成하고, 또한 發展시킨다」고 하고 있다.²⁵⁾ 1974年憲法에서는 소聯과의 紐帶強化를 한層 強調하고 나아가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的 國家共同體의 不可分의 構成部分이다.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原則에 따라 社會主義的 共同體의 모든 國家와의 友好와 多方面에 있어서의 共同作業과 相互同盟關係를 維持하며 發展시

킨다고 하고 있다.²⁶⁾

北韓憲法도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原則을 採択하여 「國家는 맑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國際社會主義原則에 따라 社會主義나라들과 團結하고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團結하여 그들의 民族解放鬪爭과 革命鬪爭을 支持聲援한다」(16조)고 하고 있다.

中共憲法도 그 前文에서 外交政策의 五原則을 強調하고 霸權主義를 排擊하고 있다. 「國際關係中에서 우리들은 主權과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相互內政不干涉, 平等互惠, 平和共存이라는 五原則의 基礎위에 各國과의 關係를 樹立하여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永遠히 霸權을 求하지 않으며 永遠히 超大國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堅持하고 세계의 世界의 理論을 基礎로 하여 全世界의 프롤레타리아階級, 被抑壓人民 被抑壓民族과 團結을 強化하며, 第3世界諸國과의 團結을 強化한다. ……」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新設된 第4章 對外政策의 冒頭에서 소聯對外政策의 目標과 原則의 闡明에서 첫째, 소聯에서 共產主義를 建設하는데 有利한 國際的環境을 確保하며, 둘째, 소聯邦의 國家的利益의 保護, 셋째, 世界社會主義의 立場을 強化하고, 넷째, 民族解放과 社會的進歩를 위해 鬪爭하는 人民을 支援하며…… 등으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明示하였을 뿐 아니라(第28條), 다시 「소聯邦은 社會主義世界體制, 社會主義協同體의 一構成部分으로서 社會主義的國際主

義의 原則에 基하여 社會主義諸國과의 友好, 協力 및 同志的相互援助를 發展시키고 確固히하며 經濟的 統合 및 國際的 社會主義的分業에 積極적으로 參加한다」고 하고 있다. (第 30 條)

소聯과 他國家間的 原則에 對해서는 ①主權의 平等 ②힘의 行使, 또는 힘에 의한 威嚇의 相互放棄 ③國境의 不可侵 ④國家의 領土 保全 ⑤紛爭의 平和的解決 ⑥內政不干渉 ⑦人權 및 基本的自由的 尊重 ⑧諸民族의 同權 및 自己의 運命을 決定하는 權利 ⑨國家間의 協力 및 ⑩國際法의 一般的으로 承認된 原則과 規範 및 소聯 邦이 締結한 條約에서 生하는 義務의 誠實한 履行의 原則의 遵守에 따르는 것임을 規定하고 있다. (第 29 條)

東獨憲法이 社會主義國家에서의 소聯의 指導的 役割을 認定하고 소聯에 密着되어 있는데 對하여 北韓憲法은 中 소紛爭에서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있는 中立의 姿를 보인다. 다른 나라 憲法과 달리 北韓憲法은 共產主義輸出을 위한 民族解放鬪爭과 革命鬪爭을 支援한다고 規定한 것이 好戰的인 인상을 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憲法에는 規定되고 있는 國際法尊重의 原則 등을 規定하지 않고 있어 特徵的이다. 北韓憲法은 「國家는 우리 나라를 友好的으로 對하는 모든 나라들과 完全한 平等과 自主性, 互相尊重과 內政不干渉 互惠의 原則에서 國家的 및 政治, 經濟 文化的關係를 맺는다」(16 조 2 항)고 하여 選別的 外交와 互惠平等을 外交政策의 根本으로 삼고있는 것 같다.

(라) 社會主義的適法性的 原則

앞스나 英겔스에 의하면 法은 國家와 마찬가지로 枯死하는 것이 原則이나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도 法은 枯死하지 아니하고 法の 遵守가 強要되고 있다.

1968年 東獨憲法은 第19條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은 모든 市民에게 權利의 行使와 社會的發展의 指導에 대한 參與를 保障한다. 社會主義的適法성과 法的安全性은 保障된다」고 하고 있다. 1974年憲法에서도 이 條項은 改正되지 않았다. 特히 「司法은 社會主義的適法性的 實施, 獨逸民主共和國 및 그 國家 社會秩序의 保護와 發展에 奉仕한다. 司法은 人間의 自由, 平和로운 生活, 權利 및 尊嚴을 保護한다」(第90조)고 하고 있다. 또 檢察은 社會主義社會 國家秩序 및 市民의 權利保全을 위하여 獨逸民主國의 法律 및 其他의 法規定의 根柢에 따라 社會主義的 適法性的 嚴格한 遵守를 監視한다. (第97條)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憲法도 社會主義的適法性이라는 말은 使用하고 있지 않으나 法の 遵守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17條는 「모든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및 公民들에 의하여 法은 自覺적으로 遵守된다」고 함으로 法の 遵守義務를 國家機關등과 公民에게 認定한 것이 特色이다. 27)

中共憲法은 第18條에서 「法律을 基礎로 하여 부르조아의 政治的權利를 박탈하며 勞動을 통하여 改造한다」고 하고 第43條에서 最高人民檢察院이 國務院에 所屬된 各部門 地方各級國家機關, 國家機

關工作要員 및 人民이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있는지의 與否에 대해 檢察權을 行使한다」고 하고 第56條에서 市民의 憲法과 法律遵守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1977年의 소聯憲法은 社會主義的適法性的 遵守를 市民(第59條, 第65條)과 國家(第4條, 第57條) 모두에게 要求하고 있다.

59條2項은 「소聯邦의 市民은 소聯邦憲法 및 소비에트의 法律을 遵守하고 社會主義的共同生活規則을 尊重하고 名譽있는 소聯邦市民의 이름을 品位를 가지고 지낼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第4條에서는 「소비에트國家 및 그 모든 機關은 社會主義的適法性에 따라서 活動하고, 法秩序 社會의 利益 및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保護를 保障한다. 國家組織 社會團體 및 公務員은 소聯邦憲法과 소비에트의 法律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볼때 北韓도 形式的으로는 社會主義國家의 憲法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的適法性的 原則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2)經濟條項에 있어서의 異同

(가) 計劃經濟의 原則

모든 共產主義憲法은 經濟條項에서 計劃經濟의 原則을 導入하고 있다. 1968年의 東獨憲法은 9條3項에서 「東獨의 經濟秩序

는 社会主義的計劃經濟다. 社会主義의 經濟体制은 社会的發展의 根本問題에 대한 中央集權的인 國家計劃과 指導와 結合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29) 1974年 憲法에서도 약간의 字句修正이 있을 뿐 根本的으로는 같다. 30)

北韓憲法은 第2章에서 經濟에 관한 章을 두고 있는데 17條에 걸쳐서 經濟의 一般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政治에 관한 第1章에서도 第2條에서 北韓은 「社会主義的生產關係과 自立的民族經濟의 土臺에 依拠한다」고 하고 第6條에서 「國家는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된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의 利益을 擁護하며 保護한다」고 하고 있다. 第31條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人民經濟는 計劃經濟이다. 國家는 社会主義的經濟發展法則에 따라 蓄積과 消費의 均衡을 옳게 잡으며 經濟建設을 다그치고 人民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며 國防力을 強化할 수 있도록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여 實行한다. 國家는 計劃의 一元化, 細部化方針을 實現하여 生產成長의 높은 速度와 人民經濟의 均衡的發展을 保障한다」고 하고 있다.

中共新憲法도 計劃經濟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는데 第11條는 「國家는 항시 높은 目標을 尙해 「많이 빨리 훌륭하게」 浪費없는 社会主義를 建設한다는 總路線을 堅持하고 人民經濟를 計劃的인 比例에 따라 빨리 發展시켜 社會의 生産力을 不斷히 높이고 國家의 獨立과 安全을 公고히 하며 人民의 物質生活과 文化生活을 점차 改善한다. 國家는 人民經濟를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獨立自主, 自立

更生, 刻苦奮闘, 勤儉建國의 方針을 堅持하고 農業을 기초로 工業을 유도하는 方針을 堅持하여 中央의 統一的指導下에 中央과 地方의 積極性을 十分發揮시킬 方針을 堅持한다」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도 第16條에서 「소聯邦의 經濟는 國의 領土에 있어서의 社會的 生産分配 및 交換의 모든 環을 包括하는 單一의 國民 經濟的複合體를 이룬다. 經濟에 대한 指導는 經濟的 및 社會的發展의 國家計劃에 따라 部門別 및 地域別의 原則을 고려에 넣어 中央集權的管理와 企業 企業合同 및 其他의組織의 經濟的自主性 및 自發性과를 統合하여 行해진다. 이 경우 經濟計劃制, 利潤, 生産原價 및 其他의 經濟的지렛대와 刺戟이 積極的으로 利用된다」고 하고 있다.

(나) 物質的 刺戟問題

共產主義憲法에 있어서 計劃經濟의 原則은 같으나 利潤追求등 物質的刺戟問題에 관한 規定이 도입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다. 소聯의 新憲法은 第14條3項에서 「社會적으로 有用한 勞動 및 그 成果는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地位를 規定한다. 國家는 物質的刺戟과 精神의刺戟과를 結合하고 生産革新, 일에 대한 創造的인 態度를 장려하고 勞動이 各 소비에트人의 第1次的인 生活上의 欲求에로 轉化하는 것을 助成한다」고 하고 第15條에서 「社會主義下에서의 社會的生産의 最高의 目的은 사람들의 增大하는 物質的 및 精神의欲求의 가장 完全한 充足이다. 國家는 勤勞者의 創造的

積極性, 社會主義競爭 및 科學技術進步의 成果에 依拠하여 經濟指導의 形態 및 方針을 改善하여 勞動生産性의 向上, 生産效率 및 일의 質의 向上 및 國民經濟의 躍進的, 計劃適合的 및 均衡이 實現發展을 保障한다」고 하고 있다.

中共의 新憲法도 10條2項에서 「勞動은 勞動能力을 가진 모든 公民의 光榮있는 責務이다. 國家는 社會主義勞動競爭을 提唱하고 프롤레타리아階級の 政治優先을 前提로 精神的獎勵 物質的獎勵를 結附하고 나아가 精神的獎勵를 主로 하는 方針을 實行하고 公民의 勞動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的積極性과 創意性을 鼓舞한다」고 하고 있다.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利潤追求, 物質的刺戟問題 등은 修正主義的 傾向이라고 하여 批判되었으나 소聯憲法과 中共憲法은 이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不可避性에서 이를 規定하고 있다.³¹⁾

北韓憲法은 아직도 物質的刺戟問題를 規定하지 않고 精神的刺戟만을 강조하고 있다. 第27條는 「勤勞大衆은 歷史의 創造者이며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는 數百萬勤勞大衆의 創造的 勞動에 의하여 建設된다. 우리나라 勤勞者들은 모두 다 勤勞에 參加하며 祖國과 人民과 自身에 대하여 自覺的熱誠과 創發性을 내어 일한다. 國家는 勤勞者들의 政治思想意識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勞動의 量과 質에 依한 社會主義分配原則을 正確히 適用한다」고 하고 있다.

第23條는 「國家는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自己活動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北韓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社會의 物質的富源은 全的으로 勤勞者들의 福利增進에 돌려진다」고

하고 있어 새로운 憲法制定時에는 物質的刺戟問題와 利潤配分問題등이 規定될 可能性이 있다.

(다)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所有形態

共產主義憲法은 基本的인 生産手段에 대한 國有化, 社會化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또 農業資産의 國·公有化를 原則으로 하고 生産業業協同組合에 의한 農業資産의 所有를 原則으로 한다. 勤勞에 의하여 얻은 所得과 消費財에 대한 個人的 所有를 私的所有와는 다른 市民의 個人的所有者로서 構成하여 그 權利를 保護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第18條에서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이다」고 하고 「國家所有는 全體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의 對象에는 制限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資源, 重要工場, 企業所, 港灣運轉, 交通運輸 및 通信機關은 國家만이 所有한다」(第19條)

「協同團體所有는 協同管理에 들어있는 勤勞者들의 集團的所有이다. 土地, 부림집승, 農機具, 고기배, 建物等과 中少工場, 企業所는 協同團體가 所有할 수 있다. 國家는 協同團體所有를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20條)고 하고 「國家는 社會主義的協同經理의 制度를 鞏固發展시키며 協同團體에 들어 있는 全體成員들의 自願的意思에 따라 協同團體所有를 漸次 全人民의 所有로 轉換시킨다.」(第21條)고 하고 있다. 「個人所有는 勤勞者들의 個人的消費를 爲한 所有이다. 勤勞者들의 個人所有는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分配와 國家 및 社會

의 追加的惠沢으로 이루어 진다. 協同農場員들의 터밭經理를 비롯
한 住民의 個人副業經理에서 나오는 生産物도 個人所有에 屬한다.
國家는 勤勞者들의 個人所有를 法的으로 保護하며 그에 對한 相統
權을 保障한다」(第 22 條)

東獨憲法도 第 10 條에서 社會主義的財産權을 保障하고 第 11 條에서
市民의 個人的財産權과 相統權을 保障하고 있다.³²⁾ 또 著作權과 發明
特許權도 保障하되 財産權과 著作權 發明特許權의 行使는 社會의
利益에 反해서는 안되도록 規定하고 있다. 地下資源, 鎭山, 發電所
댐과 大河, 大陸棚의 自然資源 産業施設, 銀行과 保險會社, 人民所有
財, 交通道, 鐵道, 海運과 航空의 交通手段, 郵便, 電信施設은 人
民所有로 하고 있다. (第 12 條) 또 協同組合的 所有를 規定하고
있다. (第 13 條)

東獨의 國民經濟는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所有에 基礎를 둔다. 그
것은 社會主義的 生産諸關係는 獨占資本主義經濟體制에 對한 鬭爭의
結果로서 成立했다. 獨占體와 大土地所有者의 權力剝奪을 통하여
戰爭政策과 人間의 人間에 의한 搾取의 源泉은 排除되었다. 社會
主義的所有는 그 正當性을 證明했다」고 하고 있다. (第 9 條 1 項)

中共新憲法도 「中共의 生産手段所有制에는 現段階로서 主로 다음
의 두 種類가 있다. 즉 社會主義의 全人民의所有制과 社會主義의
勤勞大衆에 의한 集團的所有制이다」(第 5 條)고 하고 「國營經濟
즉 社會主義의 全人民의所有制의 經濟는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指導
的인 힘이다. 鎭物資源, 水域, 國有의 森林, 未墾地 및 其他의 海

陸資源은 모두 全人民의 所有에 屬한다」(第6條)고 하고 「農村人民公社의 經濟는 社會主義의 勤勞大衆에 의한 集團的所有制의 經濟이며 現在는 一般的으로 公社, 生産大隊, 生産隊의 三級所有制를 實施하고 또 生産隊를 基本採算單位로 한다」고 하고 있다.(第7條) 「國家는 公民의 合法的所得, 貯蓄, 家屋 및 其他의 生活手段의 所有權을 保護한다」(第9條)고 하고 있다.

소聯新憲法도 「소聯邦의 經濟시스템의 基礎를 이루는 것은 國家의 財產量 및 코르호오즈的=財同組合의 財產의 形態를 取하는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이다. 規約上의 任務를 實現하기 위하여 必要한 勞動組合 其他의 社會團體의 財產도 社會主義的 所有이다」(第10條)고 하고 있다. 나아가 「土地, 地下資源, 木 및 森林은 國家의 排他的 所有下에 있다. 國家에는 工業, 建設 및 農業에 있어서의 基本的 生産手段, 輸送 및 通信의 手段, 銀行, 國家에 依해서 組織된 商業企業, 公益企業 및 其他의 企業의 財產, 都市의 基本的 住宅 Fund 및 國家의 任務를 實現하기 위하여 必要한 기타의 財產이 속한다」(第11條)라고 하고 第12條에서는 協同組合의 財產을 規定하고 있다.

소聯憲法에서는 個人的 財產에 관하여 特別히 상세히 規定하고 있다. 「소聯邦市民의 個人的 財產의 基礎를 이루는 것은 勤勞에 의한 所得이다. 個人的 財產下에 두어지는 것은 世帶道具, 個人的 消費와 便益에 提供되는 物品, 家庭副業, 住宅 및 勤勞에 의한 貯蓄이다. 市民의 個人的 財產 및 그 相續權은 國家에 依하여 保護된

다. 市民은 副業(家畜 및 家禽의 飼育을 包含한다) 果樹園 및 花園을 營為하기 위하여 또 個人的住宅建設을 위하여 法律이 定하는 節次에 따라 供與되는 土地區劃을 利用할 수 있다.

市民은 供與된 土地區劃을 合理的으로 利用할 義務를 진다. 國家 및 勸호즈는 市民이 副業經營을 營為할 것을 援助한다」(第 13條)고 하고 있다.

(라) 例外的인 小規模의 私經濟와 勞動

北韓憲法은 協同農場員들의 터밭經理를 비롯한 個人副業經理를 認定하고 있다. (第 2條) 그러나 그 以上の 個人經營은 認定하지 않고 있다. 1968年의 東獨憲法은 第 14條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的企業, 施設의 利用과 經營은 社會의 需要를 充足시키고 人民의 福祉向上과 社會의 富의 增大에 貢獻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社會主義的經濟企業, 施設과 私的인 그것과의 緊密한 協力은 國家에 의해서 助成된다. 私的企業은 그것이 社會의 必要와 一致하는 경우 申請을 하여 國家의 經營參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³³⁾ 1974年憲法은 第 14條 2項에서 「大部分이 個人的 勞動에 根拠하는 小規模의 手工業과 其他의 企業經營은 法律의 根拠下에서만 營為할 수 있다.

社會主義的社會를 위한 責任을 지는 範圍內에서 個人企業은 國家에 의해서 促進된다」고 보고 있다.

中共新憲法은 「國家는 單獨으로 農業以外的 勞動에 從事하는 者가 市, 鎮 또는 農村의 基層組織의 統一的按配와 管理下에 法律이

許容하는 範圍 안에서 他人을 搾取하지 않는 個人勞動에 從事하는 것
을 許容한다. 同時에 이들을 漸次 社會主義集團化의 길로 끌어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第5條2項)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도 個人的勞動活動을 어느정도 認定하고 있다. 「소聯邦
에 있어서는 法律에 따라서, 家内手工業, 農業 및 住民에 대한 生
活서비스의 領域에서의 個人的 勞動活動 및 市民과 그 家族構成
員의 個人的勞動만에 根拠하는 其他의 種類的 活動이 認定된다.
國家는 個人的勞動活動을 規制하고 社會의 利益을 위하여 그것을 利
用할 것을 保障한다」(第17條)고 하고 있다.

北韓도 發展된 社會主義段階에 들어가면 이러한 個人活動이 認定될
餘地가 있을지 모른다. 現在는 後進國이기 때문에 「國家는 工業化
의 成果를 鞏固發展시키며 社會主義의 物質, 技術的土台를 더욱 튼튼
히 하기 위하여 鬪爭한다」(第24條)고 하고 「國家는 技術革命을
推進하여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 農業勞動과 工業勞動의 差異를 없
애고 勤勞者들을 힘든 勞動에서 解放하며 肉體勞動과 精神勞動의 差
異를 漸次的으로 줄인다」(第25)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소聯憲法은 「國家는 勞動條件의 改善, 勞動의 保護 및 勞動의 科
學的組織 및 國民經濟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의 生産過程의 綜合的機
械化 및 自動화에 根拠한 肉體的重勞動의 縮少 및 將來에 있어서의
그 完全한 一掃에 관해서 配慮한다」고 하고 있다. (第21條).
이 두 規定은 相當한 類似點을 가지고 있다.

(나) 勞賃과 課稅問題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은 勞動의 權利를 極히 重要視 하고 있다. 그리하여 勞動이 市民의 權利임과 同時에 市民의 名譽이며 義務인 것을 規定하고 있다. 社會主義憲法은 「各人은 그 能力에 따라 그 勞動에 따라」라는 分配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1968年의 東獨憲法은 第24條에서 勤勞의 權利를 保障하면서 勞動의 質과 量에 따르는 勞賃을 받을 權利를 認定하고 있다.³⁴⁾ 北韓憲法도 第56條에서 勤勞의 權利를 保障하고 「公民은 能力에 따라 일하며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國家는 낡은 社會의 遺物인 稅金制度는 完全히 없앤다」고 하고 있다. (第33條) 北韓은 稅金의 全廢를 世界各國에서 처음으로 實施하였다고 하여 크게 자랑하고 있다.

中共의 新憲法은 「公民은 勞動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全般의 配慮라고 하는 原則에 根拠하여 勞動, 就業을 按配하고 生産의 發展을 基礎로 勞動報酬를 점차 增加하여, 勞動條件을 改善하고, 勞動保護를 強化하고 集團의 福祉를 擴大하여 公民이 이 權利를 享受할 수 있도록 保障한다」(第48條)고 하고 있다.

또 「國家는 일하지 않는 者는 먹어서는 안된다」 「各各 能力에 따라서 勞動하고 勞動에 따라서 分配한다」는 社會主義의 原則을 實現한다. 「勞動은 勞動能力을 갖는 모든公民의 光榮있는 義務이다」(第10)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勤勞의 權利를 強調하고 또 勤勞의 義務를 強調하고

있다. 第40條는 「소聯邦의 市民은 適性, 能力, 職業訓練 및 教育에 따라서 社会的要請을 考慮하여 職業 種類 및 職業을 選擇하 權利를 包含하여 勞動의 權利 即 勞動의 量과 質에 應하여 國家에 의해서 定해진 最底額이상의 勞動에 대한 支払을 隨伴하는 保證된 일을 얻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社會主義經濟시스템 生産諸力의 끊임없는 增大, 無償의 職業 教育, 勞動機能의 向上, 새로운 專門知識의 習得 및 職業選擇指導 및 職業斡旋制度의 發展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하고 있다. 또 第60條는 「自己가 選擇한 社会的으로 有用한 活動의 分野에 있어서 誠實한 勞動 勞動規律의 遵守는 勞動能力을 가진 소聯邦의 모든 市民의 義務이며 名譽이다. 社会的으로 有用한 勞動의 忌避는 社會主義社會의 原則과 兩立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國家는 「勞動條件의 改善, 勞動의 保護 및 勞動의 科學的組織 및 國民經濟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 生産過程의 機械化 自動化」를 規定하고 있고(第21條). 「國家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根拠하여 勤勞者의 勞動에 대한 支払 및 實質所得의 水準을 向上시킬 路線을 確固히 實行한다. 소비에트人의 欲求를 보다 完全히 充足하기 위하여 社会的消費 Fund가 設置된다. 國家는 社會團體 및 勤勞集團의 廣範한 參加를 얻어 이 Fund의 增大와 公正한 配分을 保障한다」(第23條)고 하고 있다. 또 「社会的인 富의 增大 및 人民 및 各소비에트人의 福祉向上의 源泉은 소비에트人의 搾取에서 自由로히 된 勞動이다. 國家는 「各人은 能力에 따라서 일하고 勞動에 따라서 받는다」고 하는 社

會主義의 準則에 따라서 勞動과 消費의 基準에 대한 kontrol을 行한다. 國家는 課稅되는 所得의 租稅額을 定한다」고 하여 所得稅의 免稅水準등을 決定하도록 하고 있다.

北韓憲法이 勞動의 權利, 義務를 強調하면서 適正賃金を 否定하는 대신에 稅金의 廢止를 規定한 것은 아니려니라고 하겠다.

開發된 社會主義國家가 形成되면 蘇聯과 같이 適正賃金과 分配原則이 強調될 것이 아닌가 한다. 現在狀態에서는 個人的消費段階가 아니고 強制勞役段階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憲法은 「勞動은 公民의 神聖한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勞動에 自覺적으로 誠實히 參加하여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 (第 69條)고 하고 「國家는 勞動組織을 잘 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여 勞 時間을 完全히 利用하도록 한다」(제 28조)고 하고 있다.³⁵⁾

(바) 工業化와 環境保存

오늘날의 發達된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工業化에서 오는 環境破壞를 막기 위하여 環境保護條項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憲法은 아직도 工業化를 指向하고 있으며 環境保護에까지는 關心이 없음을 들어 내고 있다. 「北韓에 마련된 自立的民族經濟의 土臺는 國家의 富強發展과 人民生活向上의 物質的担保이다. 北韓에서는 工業化의 歷史的課業이 빛나게 實現되었다.」(第 24條)고 자랑하고 있으나 아직도 工業化의 成果를 公開發見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未開發工業國임을 들어내고 있다.

이에 反하여 工業先進國인 東獨이나 소聯憲法은 環境保護에 보다 큰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36) 東獨憲法은 이미 1968年憲法에서 環境權條項을 두고 있었다. 第15條2項은 「市民의 厚生福祉를 위하여 國家와 社會는 自然保護를 配慮한다. 湖, 河川 및 大氣를 깨끗하고 맑게 保存할 것과 勤, 植物界 및 鄉土의 風致美의 保護는 그 管轄의 機關에 依하여 保護되는 同時에 나아가서는 各市民의 責務이기도 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37)

소聯憲法도 第18條에서 環境保護를 規定하고 있다. 「소聯邦에 있어서 現在 및 未來의 世代를 위하여 土地, 地下資源 水資源 植物界 및 動物界의 보호 이들의 科學的인 根柢에 基한 合理的利用 大氣 및 물의 淸淨의 維持, 天然資源의 再生産의 保障 및 人間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가 取해진다」

또 第67條에서는 自然保護의 義務를 規定하고 第68條에서는 市民의 文化財保存의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中共憲法은 第11條에서 農業을 基礎로 하고 工業을 嚮導者로 하는 方針을 宣言하고 環境保護를 規定하고 있다. 「國家는 國民經濟를 發展시키는 가운데서 獨立自主, 自力更生, 刻苦奮鬥, 勤儉建國의 方針 및 農業을 基礎로 하고 工業을 導手로 하는 方針을 堅持하고 中央의 統一的指導下에 中央과 地方과의 들의 積極性을 充分히 發揮시킬 方針을 堅持한다. 國家는 環境과 天然資源을 保護하고 하고 其他의 公害를 豫防, 除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38)

北韓에서도 農業에 관해서는 여러規定을 두고 있다. 첫째로는

都農間の 隔差를 規定한 第 26 条이며 農村經理의 企業化方案을 規定한 第 30 条가 있다. 第 26 条는 「國家는 都市와 農村의 差異, 勞動階級과 農民의 階級的差異를 없애기 위하여 郡의 役割을 높이며 農村에 對한 指導와 幫助를 強化한다. 國家는 協同農場들의 生産施設과 農村 文化住宅을 國家負擔으로 建設하여 준다」고 規定하고 있다.³⁷⁾ 이는 農工併進政策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對外貿易의 國家獨占

共產主義國家의 經濟는 원래가 自給自足을 基盤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對外貿易關係에서는 별로 規定하고 있지 않다.

1968 年의 東獨憲法은 「外國貿易 및 換經濟를 包含한 對外經濟는 國家가 獨占한다」(第 9 條 5 項)고 規定하였다. 北韓憲法은 第 34 條에서 「對外貿易은 國家 또는 國家의 監督 밑에서 한다. 國家는 完全한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對外貿易을 發展시킨다. 國家는 自立的民族經濟를 保護하기 위하여 關稅政策을 實施한다」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이나 中共憲法이 對外貿易에 關해서 規定하고 있지 않는 데 對하여 北韓憲法이 이를 規定한 것은 한 特色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社会, 文化条項에 있어서의 異同

共產圈憲法에서 特別히 文化의 章을 두고 있는 것은 北韓憲法과 소聯憲法등이며 文化条項을 두고 있는 것이 一般的傾向이다. 東獨憲法은 第17条와 第18条에서 文化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가) 社会主義的 民族文化

東獨憲法은 第18条에서 「社会主義的 民族文化는 社会主義社會의 基礎에 屬한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平和와 人道主義와 社会主義的인間共同社會의 發展에 奉仕하는 社会主義文化를 振興하고 保護한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心理作戰과 人間的 墮落을 위하여 奉仕하는 帝國主義的인非文化와 鬭爭한다. 社会主義社會는 勤勞者의 文化的 生活을 助成하고 民族의 文化遺産과 世界文化의 모든 人道主義的인價値를 育成하고 또한 社会主義的인民族文化를 全人民의 事項으로서 發展시킨다」고 하고 있다.⁴⁰⁾

北韓憲法은 「北韓에서는 全体人民이 다 공부하며 社会主義的인民族文化가 全面的으로 開化發展한다」(第35条)고 하고 「北韓은 文化革命을 철저히 遂行하여 모든 勤勞者들을 自然과 社會에 關한 깊은 知識과 높은 文化技術水準을 가진 社会主義 共產主義建設者로 만든다」(第36条)고 하고 「北韓은 社会主義勤勞者들을 爲하여 服務하는 참다운 人民的이며 革命的인 文化를 建設한다. 國家는 社会主義的인民族文化建設에서 帝國主義的인 文化的인浸透와 復古主義的인傾向을 反對하며 民族文化遺産을 保護하고 그것을 社会主義現實에 맞게 繼

承 發展시킨다」(第 37 条)고 하고 「國家는 民族의 形式的 社會主義的內容을 담은 主体的이며 革命的인 文化藝術을 發展시킨다. 國家는 作家, 藝術人들의 創作活動을 獎勵하며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大衆을 文芸活動에 널리 參加시킨다」고(第 45 条)하고 「國家는 우리말을 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의 民族語抹殺政策으로 부터 지켜내며 現代의 要求에 맞게 發展시킨다」(第 46 条)고 하고 있다.

中共憲法은 「國家는 모든 思想, 文化領域에 있어 맑스主義, 레닌主義, 毛沢東思想의 指導的地位를 堅持한다. 모든 文化事業은 勞動者 農民 兵士를 위해 奉仕하고 社會主義를 위해 奉仕해야 한다. 國家는 藝術의 發展과 科學의 進歩를 促進시켜 社會主義文化의 繁榮을 促進키 위해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方針을 實行한다」(第 14 条)고 規定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社會主義的民族文化에 관해서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國家는 「各人의 自由로운 發達이 萬人의 自由로운 發達의 條件이다」고 하는 共產主義的理想에 따라서 市民에 의한 그 創造力, 能力 및 才能의 發輝 및 個人의 全面的發達을 위한 現實的인 機會를 擴大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設定한다」(第 20 条)고 하여 自由로운 發達을 規定하고 있다. 또 「國家는 精神的 價値를 保護하고 增大시키며 그것이 소비에트人의 道德的 및 美學的教育 및 그들의 文化水準의 向上을 위하여 廣範하게 利用되는 것에 대하여 配慮한다. 소聯邦에 있어서는 職業的 藝術 및 人民

의 藝術的 創造發展이 모든 手段方法에 의하여 獎勵된다」(第 27 條)고 規定하고 있다.

(나) 社會主義的教育과 새 人間의 創造

共產主義憲法은 教育을 重視하여 이를 規定하고 있다. 1968 年의 東獨憲法은 第 17 條에서 「科學과 研究의 振興」을 規定하고 統一的 社會主義的教育制度를 保障하고 科學과 教育을 振興하고 그 濫用을 禁止하고 있다. 東獨의 이 規定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否定한 것으로 1949 年憲法의 3 條 1 項을 否定한 것이다. 그런데 1968 年憲法에서는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와 文化的生活에의 參與權을 規定하고 있다. (第 25 條) 그런데 教育의 目的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國際主義의 精神에 貫徹되고, 또한 高度한 一般教養과 專門的素養을 培고, 全面的으로 形成된, 또한 調和的으로 發展한 人間의 社會主義的共同社會를 向하여 人民이 前進하는 것을 保障한다」(第 25 條 2 項)고 하고 있다.

東獨은 10 年間의 義務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職業教育과 再教育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大學教育에의 機會가 제공되고 있으며 公納金免除등이 행해지고 있다.

北韓憲法은 「國家는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爲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第 39 條)고 하고 「國家는 人民教育事業과 民族幹部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教育

과 技術教育과 生産勞動을 密接히 結合시킨다」(第40條)고 하고 있다. 또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世代들에 대하여 全般的 10年制 高中義務教育을 실시한다. 國家는 모든 學生들을 無料로 공부시킨다」(第41條)고 하고 「모든 어린이에 대하여 1年동안 學校前義務教育을 실시한다」(第43條)고 하고 「國家는 學業을 專門化하는 教育體系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形態의 教育體系를 發展시켜 有能한 技術者, 專門家들을 키워낸다. 大學 및 高等專門學校 學生들에게는 獎勵學金을 준다」(第42條)고 規定하고 있다.

또 「國家는 體育을 大衆化하고 國防體育을 發展시켜 全體人民을 勞動과 國防에 튼튼히 準備시킨다」(第47條)고 하고 「國家는 科學研究事業에서 主體를 철저히 세우며 科學者들과 生産者들의 創造的協調를 強化하여 나라의 科學技術發展을 促進시킨다」고 하고 있다. (第44條)

中共憲法은 總綱에서 「國家는 教育事業을 크게 發展시켜, 全國人民의 文化科學水準을 高揚한다. 教育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의 政治에 奉仕하고 生産勞動과 結付하여 教育을 받는 者를 德育, 知育, 體育의 어느 面에서도 成長시켜 社會主義的自覺을 갖는 教養을 가진 勤勞者로 育成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第13條)고 하고 있다. 또 「國家는 科學事業」을 크게 發展시켜 科學研究를 強化하여 技術革新과 技術革命을 展開하여 國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可能한 限 先進的技術을 採用한다. 科學技術活動에 있어서는 專門

陣과 広範한 大衆을 結付하여 學習과 獨創을 結付하지 않으면 안 된다」(第12條)고 하고 있다.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는 各種의 學校 및 其他의 文化, 教育施設을 逐次 增加시켜 教育을 普及시켜 公民이 이 權利를享受하도록 保障한다. 國家는 靑少年의 健全한 成長에 特히 配慮한다」(第51條) 또 「國家는 科學, 教育, 文學, 藝術, 報道, 出版, 衛生, 體育등의 文化事業에 從事하는 公民의 創造的活動에 關해서 이를 獎勵, 援助한다」(第52條)고 規定하고 있다.

소聯憲法도 「소聯邦에 있어서는 市民이 普通教育 및 職業訓練을 받는 것을 保障하고, 靑少年의 共產主義的 教育, 精神的 및 肉體的 發達에 기여하며 勞動 및 社會的 活動을 위하여 靑少年을 育成하는 統一的인 國民教育制度가 存在하고 改善된다」(第25條)고 하고 있다. 또 「國家는 社會의 必要에 따라서 科學의 計劃適合的인 發展 및 科學要員의 養成을 保障하고 國民經濟 기타의 生活諸領域에의 科學研究의 成果의 導入을 組織한다」(第26條)고 하고 있다. 또 「소聯의 市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는 모든 種類의 教育의 無償制, 靑少年의 普通中等義務教育의 實現등을 통하여 保障하도록 하고 있다. (第45條) 또 소聯의 市民은 文化의 成果를 享受하는 權利를 갖는다고 하고 TV, Radio, 出版事業등의 發展과 諸外國과의 文化交流의 擴大에 의하여 保障된다」고(第46條)하고 있다.

10年間의 義務教育 教育의 無償制, 共產主義的 教育등은 다 같으

北韓憲法の 規定이 보다 教條的이고 硬直的인 것으로 보인다.

(다) 勤勞者의 福祉와 參與

共產主義憲法은 勤勞者, 農民의 權利保護에 積極的이다. 東獨憲法은 第4條에서 「모든 權力은 人民의 福祉에 奉仕한다. 그것은 人民의 平和로운 生活을 保全하고 社會主義社會를 保護하고 生活水準의 計劃的向上과 人間의 自由로운 發展을 保障하고 人間의 尊敬을 지키고, 그리고 이 憲法에서 承認된 權利를 保障한다」고 하고 있다.

또 勞動組合의 權利를 保障하여 獨立性,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고 勤勞者의 勞動, 生活條件에 관한 모든 問題에 관하여 國家的機關, 經營指導部 및 其他 經濟指導機關과 協定을 締結할 權利를 保障하고 勞動組合은 疾病, 勞動傷害, 廢疾 및 老齡의 市民에 대한 包括的인 物質的 經濟的扶助와 看護에 參加한다. (第44條 45條)고 하고 있다.

第35條는 「各市民은 그 健康과 勞動力의 保護를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勤勞, 生活條件의 計劃的改善, 國民保健制度 包括的社會政策, 體育, 學校, 國民스포츠 및 旅行의 助成으로 保障된다. 社會保險制度를 基礎로 하여 疾病 및 傷害에 대해 物質的保障 無償의 醫療, 醫藥 및 其他 現物給付가 부여된다」고 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第23條에서 「國家는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을 끊임

없이 높이는 것을 自己活動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 北韓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社會의 物質的富源은 全적으로 勤勞者들의 福利增進에 돌려진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第48條에서 「國家는 全般的 無償治療制를 더욱 鞏固發展시키며 豫防醫學的方針을 貫徹하여 사람들의 生命을 保護하며 勤勞者들의 健康을 增進시킨다」고 하고 있다. 第58條는 이를 부여하여 「公民은 無償으로 治療받을 權利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病 또는 不具로 勞動力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物質的 幫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無償治療制 繼續 늘어나는 病院, 療養所를 비롯한 醫療施設,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하고 있다.

中共憲法은 社會福祉에 관한 一般原則을 規定하지 않고 權利로서 이 生活保障을 規定하고 있다. 「勤勞者는 老齡, 疾病 또는 勞働能力喪失의 경우에는 物質的援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保險, 社會救濟, 公費醫療, 協同醫療등의 事業을 遂次 發展시켜 勤勞者가 이 權利를 享受할 수 있도록 保障한다. 國家는 革命傷殘軍人, 革命烈士家族에게 配慮하여 그 生活를 保障한다」(第50條)

소聯憲法은 物質的社會保障에의 權利(第43條)와 健康保護의 權利(第42條) 住宅에의 權利(第44條)를 保障하면서 總綱에서 保健·社會保障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24條는 「소聯邦에 있어서는 保健, 社會保障, 商業, 公共給食, 生活서비스 및 公益事業의 國家的制度가 活動하고 發展한다. 國家는 住民서비스의 全領

域에 있어서의 協同組合 기타의 社會團體의 活動을 獎勵한다. 國家는 大衆的體育 및 스포츠의 發展을 促進한다」고 하고있다.

또 第8條에서 「勤勞集團은 國家的 및 社會的事業의 討議 및 決定, 生産 및 社會的發展의 計劃化 및 要員의 養成 및 配置에 參加하고 企業과 施設의 管理 및 勞動條件과 生活條件의 改善의 問題 및 生産의 發展 社會的=文化的施策 및 物質的補償에 充當된 資金의 利用의 問題의 討議 및 決定에 參加한다.

勤勞集團은 社會主義競爭을 發展시켜 作業의 先進的方法의 普及 및 勞動規律의 強化를 促進하고 그 構成員에 共產主義的道德을 敎育하고 그들의 政治的意識, 文化 및 職業的技能的 向上에 關하여 配慮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勤勞者의 福利政策에 있어서는 後進的인 社會主義憲法의 例에 따르고 있다. 經濟發展이 이루어져 發展된 社會主義段階에 이르면 北韓憲法도 福利에 關한 規定을 追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統一 軍事條項에 있어서의 異同

共產主義憲法은 軍事條項들을 두고 있고 分斷國에서는 統一條項을 두고있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41) 北韓憲法도 1968年의 東獨憲法과 같이 統一條項을 두고 있다. 1968年의 東獨憲法은 第8條2項에서 「兩獨逸國家가 同權原則下에서 정상적인 關係를 形成하고 維持하며 協助하는 것은 東獨의 國家的인 요청이다. 東獨

國家와 市民은 帝國主義者에 의하여 강요된 獨逸의 分斷을 극복하는데 努力할 것이며 西獨逸國家의 점진적인 接近에서 시작하여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根柢위에 統一되기를 努力한다」고 하고 있다.

北韓憲法도 이를 모방하여 「北韓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祖國을 平和적으로 統一하여 完全한 民族的獨立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고 하고 있어(第5條) 이 規定만 보면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統一을 願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北韓은 「全體 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적인 社會主義國家(第1條)로서 全體韓民族을 統治對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確實하지 않다. 그들은 「海外에 있는 朝鮮同胞들의 民主主義의 民族權利와 國際法에 公認된 合法的權利를 擁護한다」(第15條)고 하고있고 「海外의 모든 朝鮮公民들은 北韓의 法的保護를 받는다」(第65條)고 하고있기 때문에 外國에 있는 住民에게도 北韓憲法이 適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新憲法에서 北韓의 「首都는 평양」이라고 (第149條) 못 박고 있으나, 「國家는 內外 敵對分子들의 破壞策動으로 부터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며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온 社會를 革命化 勤勞階級化 한다」(第11條)고 하고 있고 또 「國家는 馬스·레닌主義와 루로레타리아國際社會原則에서 社會主義나라들과 團結하고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團結하며 그들의 民族解放鬪爭과 革命鬪爭을 積極 支持 聲援한다」(第16條)고 하고 있기 때문에 他國을 共產(社會)主義化하려는 基本路線에는 조금도 變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全人民的 全国家的防衛体制에 依拠하며 自衛的軍事路線을 貫徹한다. 北韓의 武装力の 使命은 労働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며 社会主義制度와 革命의 戰取物을 保衛하며 祖国의 自由와 独立과 平和를 지키는데 있다」고(第14條)하고 있어 北韓当局이 好戰性을 完全히 버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東独憲法은 1974年憲法改正에서 統一条項을 削除해 버리고 東独을 完全國家로서 認定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間에 있어서의 平和共存의 原則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의 安全과 共同作業, 世界에서 의 恒久的平和維持와 一般的軍縮을 贊成하고 있으며 軍事的復讐主義的인 宣傳은 禁止하고 있다.(第6條) 또 一般的으로 承認되고 平和와 民族間의 平和的共存에 기여하는 國際法의 原則이 國家權力과 모든市民을 拘束한다고 하고 侵略戰爭을 禁止하고 戰鬪力을 他民族의 自由를 侵害하기 위하여 投入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第8條 1. 2項) 人民軍은 다른 國防機關과 協同하여 人民의 社会主義的成果를 外部의 侵略에서 保護한다고 하고 社会主義的國家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소聯軍과 다른 社会主義 國家의 軍隊와 密接한 軍事同盟을 維持할 것을 宣言하고 있다.(第7條)

소聯憲法은 社会主義祖国의 防衛라는 章을 두고 두 條文을 두고 있다. 「社会主義祖国의 防衛는 國家의 가장 重要한 機能에 屬하며 全人民의 事業이다. 社会主義的獲得物, 소비에트人民의 平和的 勞動, 國家의 主權 및 그 領土保全을 防衛하기 위하여 소聯邦軍이 設立되고 全般的 兵役義務制가 實施된다. 소聯邦軍의 人民에 대한

責務는 社會主義祖國을 確實히 防衛하고 어떠한 侵略者에 대해서도 即時로 反應하는 것을 保證하는 戰鬥體制를 항상 整備하여 두는 것이다」(第31條)고 하고 「國家는 國의 安全 및 防衛力을 保障하고 소聯邦軍에 必要한 모든 裝備를 준다. 國家機關, 社會團體 公務員 및 市民의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고 그 防衛力을 強化하는 義務는 소聯邦의 法令에 의해서 定해진다」(第32條) 「소聯邦에 있어서의 戰爭宣傳은 禁止된다」(第28條3項)고 規定하고 있다.

中共憲法은 前文에서 「台灣省은 中共의 神聖한 領土다. 우리들은 台灣을 解放시켜 祖國統一의 大業을 完遂해야 한다」고 하고 「社會帝國主義, 帝國主義超大國의 侵略, 顛覆, 干涉, 支配, 侮辱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聯合하여 가장 幅넓은 國際統一戰線을 結成한다. 또한 超大國의 霸權主義와 새로운 世界大戰에 反對하며 人類의 進歩와 解放事業을 위해 분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 規定은 反소路線에 관한 規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中共의 武裝力은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主席이 통솔한다. 中央人民解放軍은 中國共產黨이 指導하는 勞動者 農民의 子弟兵이며 프롤레타리아階級獨裁의 基盤이다. 國家는 近代化建設의 強化에 힘을 기울이며 民兵建設에 힘을 경주하고 野戰軍 地方軍, 民兵 三結合의 武裝體制를 실시한다. 中華人民共和國武裝力의 根本的任務는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지키며 國家의 主權, 領土保全, 社會帝國主義, 帝國主義 및 그 앞잡이에 의한 顛覆活動과 侵略을 防禦하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社会帝國主義를 소
聯을 말하는 것으로서 中 소 理念 紛爭에서 武力 衝突에의 可能性 조차
없지 않다고 하겠다.

第3節 北韓憲法の 基本權規定과 共產諸國憲法の 基本權規定과의 異同

(1) 共產諸國憲法の 基本權規定의 一般의 特色

共產主義憲法들은 市民의 基本的인 權利, 義務에 關하여 比較的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基本權과는 完全히 다르다.⁴²⁾

共產主義憲法은 ①市民의 同權 特히 男女의 同權, 人種의 差別을 否定하고 있으며 ②勞動의 權利, 休息의 權利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母性의 保護, 教育을 받을 權利들에 關하여 具體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③人身의 自由, 住宅의 不可侵, 被疑者의 防禦權, 通信의 秘密등이 規定되고 있고 ④表現活動에 參加할 수 있는 權利가 保障되고 ⑤亡命者의 權利가 保障되고 있고 ⑥市民의 基本的 義務가 強調되고 있다.⁴³⁾

北韓憲法도 이러한 原理에 따라 第4章에서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第49條는 「北韓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고 規定하고 第50條는 「國家는 모든 公民에게 참다운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 幸福한 物質文化活動을 實質적으로 保障한다. 北韓에서 公民의 權利와 自由는 社會主義制度의 鞏固發展과 함께 더욱 擴大된다」고 하고 있다.⁴⁴⁾

이 規定들은 東独憲法 第19條와 약간의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東独憲法은 第19條 2項에서 「人格의 尊嚴과 自由의 尊重 및 保護는 모든 国家的機關, 모든 社会的勢力, 또 各市民個個人에 있어서 絶對的 命令이다」고 하고 3項에서 「各市民은 搾取, 抑压 및 經濟的 隸屬으로 부터 解放되어서 그 能力을 全面的으로 發展시켜 그 힘을 自由로운 決断에 依拠하여 社会的 福祉와 自己自身の 利益을 위하여 社会主義共同社会속에서 妨害받지 않고 發揮할 平等한 權利와 다양한 可能性을 가진다. 이렇게 하여 各市民은 그 人格의 自由와 尊嚴을 實現한다. 市民의 諸關係는 相互의 尊敬과 助力에 의하여 또 社会主義的道德의 諸原則에 따라서 이룩된다」고 하고 있다.

또 「다같이 일하라, 다같이 計劃하라, 다같이 統治하라」의 原則이 實現되며 市民의 社会主義社会와 社会主義國家의 政治的, 經濟的, 社会的, 文化的 生活的 組織에 包括적으로 參加할 權利가 認定되고 있다: (第21條)

소聯憲法은 第39條에서 「소聯邦의 市民은 소聯邦憲法 및 소비에트의 法律에 의하여 宣言되어, 保證되는 모든 社会的, 經濟的, 政治的 및 人格的權利와 自由를 가진다. 社会主義體制는 社会的, 經濟的 및 文化的 發展의 프로그램의 遂行에 따라서 市民의 權利 및 自由의 擴大 및 그들의 生活水準의 不断的 向上을 保障한다. 市民에 의한 權利 및 自由의 行使는 社会 및 國家의 利益과 기타의 市民의 權利에 損害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45)

中共憲法에는 基本權保障에 대한 一般原則이 規定되어 있지 않다.

(2) 基本權規定의 異同

北韓憲法の 基本權規定은 平等權(第51條) 參政權(第52條)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第53條)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第54條) 住居의 不可侵, 人身의 不可侵, 信書의 秘密(第64條) 勤勞의 權利(第56條), 休息의 權利(第57條) 無償治療의 權利(第58條) 教育을 받을 權利(第59條), 男女平等權(第62條) 婚姻과 家庭의 保障(第63條) 革命遺家族의 保護(第61條) 著作權 發明權의 保護(第60條), 申訴와 請願權(第55條), 亡命者保護(第66條) 海外公民保護(第65條), 科學, 文學, 藝術活動의 自由(第60條) 등을 規定하고 있다.

東獨憲法에는 이밖에도 人間의 尊敬(第19條), 社會的參與權(第21條), 出版, 라디오 및 텔레비존放送의自由(第27條) 居住移轉의自由(第32條) 住居를 要求할 權利(第37條) 勞動組合의 權利(第44條)(第45條) 등이 追加되고 있다.

소聯憲法은 市民의 權利, 義務에 관하여 보다 더 상세히 規定하고 있다. 第2編 國家와 個人에 소聯邦市民의 同權과 男女同權, 外國人, 無國籍者의 權利人種 및 民族의 平等, 外國人의 避難의 權利를 規定하고 勞動의 權利休息의 權利, 住宅의 權利, 教育을 받을 權利, 文化의 成果를 享受할 權利, 科學, 技術 藝術創造의 自由, 參

政權, 提案權,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 人身의 不可侵性, 婚姻과 家族에 대한 保護, 住居의 不可侵, 信書의 秘密, 訴訟의 權利등이 規定되고 있다.

다음에는 個別的인 基本權의 保障方式을 보기로 한다. 北韓憲法은 平等權에 대해 「公民은 政治, 經濟, 文化等 國家生活의 分野에서 누구나 다 같은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있다. (第 51 條)

이에 대해 소聯憲法은 「一市民은 出身, 社會的 身分, 財產狀態, 人種的 및 民族的 所屬, 性別, 教育, 言語, 宗教에 대한 態度, 職業, 居住地 如何에 關係없이 法律앞에서 平等이고, 市民의 平等은 市民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保障된다」고 한다. (第 34 條)

女子에 대한 平等한 權利는 거의 모든 社會主義諸國 憲法이 明示하는 것으로 「女子는 男子와 똑 같은 社會的 地位와 權利를 가진다」(北韓憲法 62 條前段)

「女子는 ……男子와 平等한 權利를 가진다. 같은 勞動을 했을 경우 같은 報酬를 받는다」(中共憲法 53 條) 同一한 條項은 소聯憲法에서도 規定되고 있다. (35 條)

그밖에 產前產後 休暇保障, 託兒所 및 幼雅園網의 擴張, 母子의 保護(北韓憲法 62 條, 類似 中共憲法 53 條 소聯憲法 35 條)를 規定하고 있다.

勞動의 權利에 대해서는 「公民은 勞動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北憲 56 條) 「人民은 勞動할 權利를 갖는다」(中共憲法 48 條) 「市民은 勞動의 權利, 即 適性 能力……에 따라서 ……作業의 種類

를 選擇할 權利가 있다」(소聯憲法 40 條) 나아가서 「希望과 才能에 따라 職業을 選擇하며…… 能力에 따라 일하며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北韓 56 條後段) 「勞動에 量과 質에 따라서 國家에 의하여 定하여진 最底額이상의 勞動에 대한 支給에 따른 保障된 일을 가질 權利가 있다」(소聯 憲法 40 條) 「國家는 全體의 利益과 個人의 利益을 同時에 配慮한다는 原則下에 勞動 就業을 按配하고…… 勞動報酬를 逐次增加하며 勞動條件을 改善하고 勞動保護를 強化한다. (中共憲法第 48 條)

北韓憲法은 第 59 條에서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이 權利는 先進的인 教育制度와 無料義務教育을 비롯한 國家의 人民的인 教育施策에 依해 保障된다」고 하고 中共憲法은 「人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國家는 人民이 이 權利를 享有하는 것을 保證하기 위해 各種學校와 기타 文化教育施設을 점차 擴大해서 教育을 普及한다」(第 51 條)라고 하고 소聯憲法은 「市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모든 種類의 教育의 無償制, 青年의 義務制 普通 中等教育의 實現, 勉學과 生活, 生産과의 結付를 基礎로 하는 職業技術教育, 中等專門教育 및 高等教育의 廣範圍한 發展, 生徒, 學生에 對한 國家獎學金 및 特典의 附與, 教科書의 無償供給, 學校에 있어서의 母國語에 依한 勉學의 可能性 및 自己教育을 위한 諸條件의 創出에 依해 保障된다」고 자세히 規定하고 있다. (소聯憲法 45)

北韓憲法 第 60 條는 「公民은 科學과 文學, 裝術活動의 自由를 가

진다. 國家는 創意考案者와 發明家들에게 配慮를 돌린다. 著作權과 發明權은 法的으로 保護된다」(北韓憲法第 60 條)라고 하는데 반해 소聯憲法 47 條에서는 「……市民은 ……科學的, 技術的, 藝術的 創造의 自由가 保障된다.

……이를 위하여 ……創造的 諸團體에 援助를 提供하고 國民經濟 기타의 生活諸領域에의 發明 및 合理的 提案의 導入을 組織한다」 「著作者, 發明者, 合理化提案者의 權利는 國家에 의해서 保護한다」고 하고 있으나 中共憲法에는 이런 條項이 없다.

또 結婚과 家族의 保護에 對해서 北韓憲法 第 63 條는 「結婚 및 家庭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社會의 細胞인 家庭을 鞏固히 하는데 깊은 配慮를 돌린다. 하고 規定하고 소聯憲法은 「家族은 國家의 保護下에 있다」(第 53 條)고 할 뿐만 아니라 婚姻의 自發的 成立, 兩配偶者의 平等, 兒童施設, 社會給養, 多子家族에의 特典, 出產手當에 對해 規定하고 있다.

人身과 住宅의 不可侵性에 對해서 北韓憲法은 「公民은 人身 및 住宅의 不可侵과 書信의 秘密을 保障받는다. 法에 根拠하지 않고는 公民을 체포할 수 없다」(第 64 條)고 한데 對해서 中共憲法은 第 47 條에서 「人民의 自由과 住居는 侵犯치 않는다. 如何한 人民도 人民法院의 決定이나 人民檢察院의 承認을 받아 安全機關이 執行할 경우 外에는 체포치 않는다」라고 하고 소聯憲法은 第 54 條에서 「市民은 人身의 不可侵權이 保障된다. 누구든지 法院의 決定에 根拠하고 또는 檢事의 許可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하고 第 55 条에서는 「市民은 住居의 不可侵性이 保障된다. 누구든지 適法한 根拠없이 居住者의 意思에 反하여 住居에 出入할 權利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고 第 56 条에서는 「市民의 個人生活, 書信電話에 의한 會話 및 電報에 의한 通信의 秘密은 法律로 保護한다」고 한다.

選舉, 被選舉權에 대해서는 北韓憲法 52 条는 「滿 17 才以上の 모든 公民은 性別, 民族別, 職業, 居住期間, 財産 및 知識程度, 党別, 政見 信仰에 關係없이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軍隊에 服務하는 公民도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진다」 하며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選舉할 權利를 빼앗긴다. 精神病者는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지지 못한다」

中共憲法은 第 44 条에서 「18 才에 달한 人民은 모든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갖는다」고 하고 「단 法律에 依해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剝奪당한 者는 除外한다」고 한다. 소聯憲法의 規定은 좀 더 包括的이어서 選舉權이나 被選舉權을 넘는 一般的인 公共參與權으로 소聯憲法이 프프롤레타리아 獨裁로 부터 "全人民國家" (第 1 条)로 移行함에 따라, 參政權이 좀 더 強調되고 市民을 公共生活에 參與시키는 幅과 機會를 보다 增大시키고 있다. 할것이나 大體的으로 參政權은 "政策完成" (Policy implementation) 이라는 넓은 過程에서 主로 行使되기 마련이며, 憲法에 明文으로 表示된 것과 같은, 보다 많은 市民이 "政策樹立" (Policy-making) 過程속으로 投入되는 機會란 기껏해야 地方行政 領域에 限定되고 있다.⁴⁶⁾

소聯憲法은 一般的인 公共參與權外에 政府機關에 提案을 提出하며 그 活動을 批判하며 그 批判을 理由로 訴追되지 않는 權利(第49條) 公務員에 對해 訴願하며 必要한 경우에는 司法府에 告訴할 수 있는 權利(第58條) 市民, 原告에 損害를 입히는 不法行爲로 因한 民事責任을 政府機關 및 公務員을 相對로 提訴할 수 있는 權利(第58條)를 市民에게 保障하고 있다. 地方政策 樹立에 있어서 市民의 參政機會가 增加된 것에 對하여는 - 소聯憲法 第14章, 19章의 地方소비에트의 責任 및 소비에트 代議員의 權限增大에 變化가 있었고, "全人民國家"의 精神에 比추어 "勞動人民代議員" 소비에트가 "人民代議員" 소비에트로 改稱되었다. (第89條) 申訴 및 請願權은 北韓憲法(第55條) 및 中共憲法(第55條)에도 規定되고 있다.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示威의 自由에 對해서는 北韓憲法 第50條는 「公民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고 하고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의 새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한다. 中共憲法은 第45條에서 「人民은 言論, 通信, 出版, 集會, 結社, 行進, 示威, 罷業의 自由를 갖고 見解를 陳述, 意見을 發表하여 弁論을 하고 大字報를 發할 權利가 있다」라고 소聯憲法은 「人民의 利益에 따라서 社會主義體制를 堅固하게 하고 發展시킬 目的으로, 소聯邦의 市民에 言論, 出版, 集會, 大衆集會, 市街行進 및 示威運動의 自由가 保障된다」고 하고 「이러한 政治的 自由의 實現은 勤勞者 및 그 組織에 對한 公共建造物, 街路 및 廣

場의 提供, 情報의 広範圍한 普及, 出版物, 「텔레비죤」 및 「라디오」를 利用할 可能性에 依해 保障된다」(第 50)고 한다.

信仰과 反宗教 宣傳의 自由는 北韓憲法 第 54 條, 中共憲法 46 條, 소聯憲法 52 條에 依해 規定된다. 1976 年の 알바니아憲法은 宗教的組織과 宗教的行為의 禁止를 規定하고 있다.

北韓憲法 57 條는 「公民은 休息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8 時間 勞動制, 有給休暇制, 國家費用에 依한 靜休養制 繼續 늘어나는 여러가지 文化施設等에 依해 保障된다」고 하고 中共憲法 49 條는 「勞動者에게는 休息의 權利가 있다.

國家는 勞動者가 이 權利를 享有하는 것을 保證하기 위해 勞動時間과 休暇時間을 定해 勞動者의 休息과 休養의 物質的 條件을 점차 增加한다」라고 한다.

소聯憲法 第 41 條는 「소聯邦의 市民은 休息의 權利가 있다」고 하고 週 41 時間以下の 勞動의 設定 特定 職種 및 職場에의 勞動日 短縮, 夜間作業時間短縮, 有給休暇制, 文化, 教養施設 擴大 등」에 의한 休食權을 明示하고 있다.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度에 있어서는 北韓憲法 第 58 條는 「公民은 無償으로 치료받을 權利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病 또는 不具로 勞動力을 잃은 사람들,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物質的 幫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이 權利는 無償 治療制, 繼續 늘어나는 病院, 療養所를 비롯한 醫療施設,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에 依하여 保障된다」고 하고 있다. 中共憲法

第50條는 「勞動者는 老齡, 疾病 또는 勞動能力을 喪失한 경우 物質的 援助를 받을 權利를 갖는다」고 하고 「國家는 勞動者가 이 權利를 享有할 수 있는 것을 保證하기 위해 社會保險, 社會經濟, 公費醫療, 協同醫療등의 方案을 점차 擴大한다. 國家는 革命상이군인, 革命烈士 家族에 대해 生活를 保障한다」라고 하고 소聯憲法 43條는 「市民은 老齡, 疾病, 勞動能力的 全部 또는 一部分의 喪失, 扶養者를 喪失하였을 때 物質的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後段은 可能한 財源 및 方途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또 소聯憲法 42條는 市民의 健康保護의 權利를 規定하고 醫療扶助, 産業衛生, 環境의 健全化, 青年健康, 兒童勞動의 禁止 其他를 文學化하고 있다.

(3) 義務規定의 異同

公民의 基本義務로는 北韓憲法 49條의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이 그대로 適用되며 北韓憲法 68條의 「公民은 集團主義 精神을 높이 發揮하며」,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울것」을 公民의 基本義務에 대한 原則으로 闡明하고 있다.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및 行動準則 遵守義務에 대해서는 北韓憲法 第67條는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行動 準則을 徹底히 지켜야 한다」고 規定하고 中共憲法

第56条는 「人民은 中国共産党的 指導를 擁護하고 社会主義制度를 擁護하며……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지 않으면 안된다」(第56条)고 하고 소聯憲法은 59条 後段에서 「소聯邦의 市民은 소聯邦 憲法, 「소비에트」의 法律을 遵守하고 社会主義的 共同生活 規則을 尊重하여……지킬 義務가 있다」고 하며 第65条에서는 「소聯邦의 市民은 他人의 權利 및 適法的 利益을 尊重하여 反社会的 行爲에 대하여 反對的인 行爲을 취하며 모든 方法으로 社会秩序의 維持를 促進할 義務가 있다」고 하고 있다.

勞動義務와 勞動規律 遵守義務에 대해서는 北韓憲法 第69条는 1項에서 「勞動은 全人民의 神聖한 義務며 名譽이다」라고 하고 2項에서 「公民은 勞動에 自覺的으로 誠實히 參加하여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 共産主義國家에서는 勞動能力이 있는 사람은 勞動의 義務를 지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말라」는 原則에 의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 社会主義分配原則이 適用된다. (第27条, 第56条)

소聯憲法에 있어서는 「社会的으로 有用한 勞動 및 그 結果는 社会에 있어서의 市民의 地位를 規定한다」라고 하고 (第14条) 「스스로 選擇한 社会에 有用한 活動分野에 있어서 誠實한 勞動, 勞動規律 및 生活規律의 嚴格한 遵守는 勞動能力이 있는 모든 소聯邦 市民의 義務이고 名譽이다」(第60条)

中共憲法 10条도 이와같은 趣旨로 規定하고 있다.

固有財産 및 共同財産 愛護義務에 대해서는 北韓憲法 70 條는 「公民은 國家財産과 共同財産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貪汚, 浪費 現象을 反對하여 鬭爭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主人답게 알뜰이 하여야 한다.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은 神聖不可侵이다」라고 한다. 소聯憲法 61 條는 「소聯邦의 市民은 社會主義的 所有를 尊重할 義務가 있다. 소聯邦의 市民의 責務는 國家的 財産 및 社會的 財産의 竊取 및 浪費와의 鬭爭이다. 社會主義的 所有를 侵害하는 者는 法律에 依해 處罰된다(第 61 條)」. 中共憲法第 8 條는 前段에서 「社會主義의 公共財産은 絶對로 侵犯되어서는 안 된다」하고 또 37 條 前段에서 「人民은 公共財産을 愛護……하고」라고 規定하고 있다.

祖國保衛義務는 北韓憲法 72 條, 中共憲法 58 條, 소聯憲法 62 條 및 63 條가 共히 規定하고 있다. 發達된 社會主義國家인 소聯의 憲法은 그 밖에도 外國市民 및 市民權이 없는 者에 대한 權利, 自由의 保障(32 條), 그리고 社會團體를 結成할 權利의 認定(51 條) 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多民族國家에 있어서 다른 市民의 民族的 尊嚴性을 尊重할 責務(64 條), 어린이의 養育에 配慮하여 社會主義 社會의 成員으로 育成할 義務(66 條) 그리고 聯邦市民의 國家的 責務로써, 他國 人民과의 友好와 協力の 發展, 全般的 平和의 維持 및 強化를 促進하는 것을 規定(第 69 條)하고 있다.

(4) 새로운 基本權의 登場

소聯憲法은 共產諸國 憲法 가운데서도 住宅에 대한 權利, 最底賃金 以上の 勞賃을 받을 權利, 週41時間 以下の 勞動의 設定 医療保險의 權利等を 規定하여 市民의 權利 擴大를 驅歌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 憲法도 住宅에 대한 權利, 生命에의 權利, 社会的 保護에 관한 權利, 環境權, 週42時間 勞動, 社會保障權등을 規定하고 있다. 東獨憲法도 住宅에 대한 權利, 人間的 尊嚴, 勞動組合의 權利等を 規定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資本主義國家의 憲法처럼 自由權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虛構的인 것이며 새로운 憲法의 制定時에는 소聯憲法등과 같이 制約規定이나 目的規定을 追加할 것으로 보인다. 또 生存權의 保障에 있어서도 住宅의 權利 勞動組合의 權利등이 追加保障될 것으로 보인다.

共產主義憲法의 基本權規定은 基本權의 實體的 物質的保障을 重視하고 있다. 오늘날 共產主義憲法에서 새로이 登場하고 있는 權利는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參與權이다. 例를 들면 勤勞者의 國民經濟計劃에의 作成에의 參與(체코슬로바키아憲法第12條) 經濟行爲에 있어서의 領導에의 勤勞者參加(불가리아第24條) 公的問題的 處理에 있어서의 市民의 參加權(헝가리第68條) 經營指導에의 勤勞者參加權(東獨42條1項 폴란드 13條) 등이 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勤勞者의 自主管理決定權등이 강조되고 있다.

第4節 北韓憲法の 統治組織條項과 共產諸國

憲法の 統治組織條項과의 異同

(1) 共產諸國憲法の 統治組織의 一般의 特色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統治組織은 人民主權, 프롤레타리아獨裁, 權力集中制에 根拠하고 있다. 47) 프롤레타리아獨裁國家의 權力構造는 民主集中制에 根拠하고 있다.

이 民主集中制는 Rousseau의 人民主權論과 結付된 것으로 政府形態로서는 議會政府制를 採択하고 있다. 48)

이 形態는 國家組織에 있어서 ①最高國家權力機關 및 地方國家權力機關은 人民의 選舉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②國家諸機關은 이러한 國家權力機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責任을 지고 또한 그 工作을 보고하며 ③國家權力은 窮極的으로는 最高權力機關으로 集中되고 上級機關의 決定은 下級機關을 拘束하고 ④各機關內部에서는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고 下級은 上級에 服從하고 地方은 中央에 服從한다는 것을 말한다. 49)

北韓도 原則的으로는 이 議會政府制를 採択하고 있다. 特히 憲法에서는 이 傾向이 濃厚하였다. 憲法上의 最高主權機關으로서는 最高人民會議과 그 常任委員會가 있어 ①憲法制定과 改正權 ②國內 國外政策에 관한 基本原則의 樹立 ③最高人民會議의 常任委員會의 選舉 ④內閣의 組織 ⑤法令의 採択 ⑥人民經濟計劃의 承認 ⑦國家

豫算의承認 ㉔道,市,郡,里区域의新設 및變更 ㉕大赦權의行使 ㉖最高裁判所의選舉 ㉗檢査總長의任命등 많은權限을가지고있었다. 50)

또最高人民會議가休會中인때를위하여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를두었다. 이委員會는最高人民會議에서選舉되며常設的인會議制主權機關으로서廣範한權限을가지고있었다. 常任委員會는소聯邦最高會議幹部會議와같이國家의代表機關이었다.

國家의管理機關으로서는內閣등執行機關이있었다. 內閣은主權의最高執行機關이며憲法 및法令에의거하여決定 및法令을公布할수있었다. 內閣은最高主權機關인最高人民會議에의하여組織되고,最高人民會議에대하여自己活動에대한責任을지고있었다. 51)

또內閣은 ①對外關係에있어서의全般的指導 및外國과의條約締結 ②對外貿易의管理 ③地方主權機關의指導 ④貨幣 및信用制度의組織 ⑤國家豫算의編成 ⑥國家產業機關등의指導 ⑦社會秩序의維持, 國家의利益保護 및公民의權利保障에관한政策의樹立 ⑧土地, 資源, 山林 및河海의利用에관한基本原則의樹立 ⑨教育, 文化, 科學, 藝術 및保健에관한指導 ⑩人民의經濟 및文化生活의水準을向上시키기위한政治的, 經濟的, 社會的對策樹立 ⑪朝鮮人民軍編成에관한指導, 朝鮮人民軍高級將官의任免 ⑫副相, 主要產業機關의責任者 및大學總長의任命등權限을가지고있었다.

또 內閣에는 全員이 參席하는 「內閣全員會議」와 首相, 第1 副首相, 副首相들이 參席하는 「內閣幹部會議」가 있었다. 이와같이 國會, 政府에 해당되는 機構가 있었고 最高裁判所나 最高檢察所가 있었다. 이것은 소聯 1936年 憲法의 모방이었다.

(2) 北韓憲法下의 統治組織의 特色

北韓新憲法은 最高人民會議와 그 常設委員會를 두었으나 그 權限은 弱化하고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고 內閣의 名稱을 政務院으로 改正하고 政務院의 權限을 縮少하고 省의 數를 10餘 個나 減少하였다.

(가) 主席制度의 比較

이러한 制度改革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主席制度의 新設이라고 하겠다.

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國家主權을 代表한다」(第 89 條). 主席은 「中央人民委員會를 直接 指導하며」(第 91 條) 主席은 「必要에 따라 政務院會議를 召集하고 指導」하며(第 92 條) 「國家의 一切의 武力을 指揮統率하며」(第 93 條) 法令과 政令을 公布하며 主席命令을 發할 수 있으며(第 94 條), 條約을 批准 및 廢棄하며(第 96 條) 다른나라 使臣의 信任狀, 召喚狀을 接受하며(第 97 條)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이다.(第 101 條) 또 全般的武力의 最高司令官이요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 되며 國家의 一切의 武力을 指揮統

率한다. (第 93 条)

主席은 副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委員등을 提議하고 政務院總理를 提議하며 國防委員會副委員長을 提議하여 最高人民委員長을 提議하여 最高人民委員會의 同意를 얻게하고 있다. (第 76 条)

이 主席은 유고슬라비아憲法の 大統領과 1954 年 中華人民共和國의 主席과 비슷한 地位를 가지고 있다.

中共의 國家主席은 各各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 또는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法律과 法令을 公布하고 國務總理, 副總理, 各部部长, 各委員會主任, 秘書長을 任免하고 國務委員會副主席 委員을 任免하고 國家의 勳章과 榮譽稱號를 授與하고 大赦令과 特赦令을 發하고 戒嚴令을 發하며, 戰爭狀態를 宣言하고 動員令을 발한다. 또 國家代表權, 武裝力 統率權 最高國務會議召集權 기타 여러가지 權限을 가지고 있다. 旧憲法の 中共의 主席은 단순한 儀禮的인 性格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實際로도 重要한 指導的 役割을 가지고 있으나 1 人獨裁는 不可能하고 全國人民代表大會, 全國人民代表大會常任委員會, 國防委員會, 最高國務會議에서 獨立해서는 機能할 수 없도록 하여 集團的指導原則을 固守하고 있다. 52)

越盟에서도 大統領制度를 두고 있었다. 越盟大統領은 國民議회의 議員中에서 國民議회의 $\frac{2}{3}$ 의 多數를 얻어 選出한다. 越盟大統領은 ①國家를 代表하며 ②全國의 武裝部隊를 指揮하고 陸, 海, 空軍司令官을 任免하며 ③部長會議主席 部長會議委員 및 政府高級職員을 任命하고 ④政府委員會를 統轄하고 ⑤國民議회에서 通過된 法律을公布하고

勳章 또는 榮譽賞狀을 授与한다. 또 ⑥戰爭과 平和를 宣布하고 ⑦條約을 締結하며 ⑧大赦令을 내린다.

1968年의 東獨憲法은 國家評議會議長의 職을 國家元首로 하고 國家評議會議長이 國務總理를 任命提請하도록하여 國家元首의 權限을 強化하고 있었다. 53) (66條2項)

유고슬라비아의 大統領도 國家代表權을 가지며, 戰鬥力의 總司令官이며 必要한 경우에는 聯邦執行委員會를 召集하고 法律을 公布하여 宣戰을 布告하고 外國의 使臣을 接受하며 赦免權을 가지며 大使 公使등을 任命한다. 루우마니아에서는 1974年 8月이 憲法改正에서 大統領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이러한 主席制度의 導入은 金日成을 國家元首로 하기 위한 것이요 1人獨裁體制를 鞏固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形式的으로는 中央人民委員會制度를 新設하여 集團指導體制를 導入하고 있는 것처럼 偽裝하고 있다.

이 主席制度는 金日成死後의 憲法에서는 共產黨의 黨首의 指揮強化로 因하여 廢止될 運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毛沢東以後의 中共이나 Ulbricht以後의 東獨이 그러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中共에서도 主席制度는 1975年憲法에서 削除되었다.

1954年憲法에서 主席의 權限에 속했던 相當部分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同常務委員會에 옮겨갔고 一部分은 國務院等에 分散되었다.

또 對外的으로 國家를 代表하는 權限은 共產黨主席이 兼任하고 其他 外交使節接受, 全國武裝力統帥등도 모두 關係所屬國家機關에 分散

歸屬되게 되었다. 54)

1978年憲法도 國家의 代表機能을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 부여함으로써 Stalin憲法에서와 같은 集團的指導代表制度를 採択하고 있다. 實質的으로는 華國鋒이 共產黨黨首이며 國務院總理로서의 機能을 統合해서 行使하여 國家元首的인 地位를 누리고 있다.

東獨에서도 1974年憲法改正에서 國家評議會議長이 權限을 弱化시키고 國家評議會의 集團的代表機能을 強化하고 있다. (第66條2項)議長은 外交使臣을 派遣하고 接授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議長은 人民議會의 最大院內交涉團體의 提案으로 選任된다.議長은 國家評議會의 業務를 管掌한다. (第69條) 副議長은 議長有故時에 그 業務를 遂行한다. 55)

1977年 소聯邦社會主義共和國憲法에서는 소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에 代表權을 認定하고 있다. 여기서의 特色은 第1副議長制度를 두어 後繼者로서의 機能을 期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56) 소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소聯邦最高소비에트의 常設機關이며 그 모든活動에 대해서 소聯邦소비에트에 대하여 報告義務를 지며 그 會期와 會期間에는 憲法에 의하여 定해진 範圍內에서 소聯邦의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의 職務를 行하도록 하고있다. (第19條)

(나) 中央人民委員會制度의 新設

北韓의 新憲法은 새로히 中央人民委員會를 設置하였다. 中央人民委員會는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이며 (第100條), 主席과 副

主席, 書記長 및 委員들로 構成한다. 副主席과 書記長 및 委員들로 主席의 提議에 의하여 最高人民會議에서 選舉하며 또 召選된다. (第76条第4号) 議長은 主席이고 委員의 任期는 4年이다. 中央人民委員會에는 对内政策委員會, 对外政策委員會, 國防委員會, 司法安全委員會 등 部門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05条)

中央人民委員會는 ①國家의 对内外政策을 세우며 ②政務院과 地方人民會議 및 人民委員會事業을 指導하고 ③司法檢察機關事業을 指導하고 ④國防 및 國家政治保衛事業을 指導하고 ⑤憲法, 最高人民會議法令, 主席命令, 中央人民委員會政令, 決定, 指示: 執行狀況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國家機關의 決定指示를 廢棄하고 ⑥政務院의 部門別執行機關인 部를 네 오거나 없애며 ⑦政務院總理의 提議에 의하여 副總理, 各部長 그밖에 政務院隨員들을 任命 및 解任한다. 또 ⑧大使와 公使를 任命 및 解任하며 ⑨將領, 軍事称号를 授与하고 ⑩勳章, 名譽称号, 軍事称号 및 外交職級을 制定하며 勳章, 名譽称号를 授与하고, ⑪大赦를 實施하며 ⑫行政區域을 새로 늘이거나 改編한다. ⑬有事時에는 戰爭狀態의 動員令을 宣布한다.

이러한 權限들은 旧憲法에 있어서의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의 重要한 權限을 大部分吸收하고 內閣의 權限一部를 統合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新憲法에서는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는 最高人民會議에 관한 事業과 立法, 法令解釈, 判事와 人民參審員의 選舉 및 召選權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北韓의 旧憲法은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蘇聯憲法을 모방하여 最高人民會議에 立法, 行政, 司法行政權을

集中시키고 事實上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가 이 權限을 行使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의 1人獨裁의 強化와 偶像化에 따라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의 權限은 점차 弱화되고 北勞黨과 內閣의 權力이 強化되는 現象이 나타났다. 新憲法은 이러한 事實을 規範化한 것으로 最高人民會議를 格下하고 法令執行과 行政의 監督, 指導權을 主席에게 集中하면서 1人獨裁란 汚名을 回避하기 위하여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中央人民委員會는 黨政協議會와 같은 機能을 가지고도 있으나⁵⁷⁾ 事實上에 있어서는 金日成의 個人獨裁를 合法化하기 위한 手段으로 보인다.

共產主義憲法의 統治構造의 特色은 勤勞者農民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를 표방하면서 事實上에 있어서는 黨의 獨裁이고 黨의 獨裁는 黨政政治委員會 (Politburo)의 獨裁이며 黨政政治委員會의 獨裁는 黨第一書記의 獨裁인 것이다. 北韓에서도 名目上으로는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에게 主權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事實上에 있어서는 黨과 社會團體의 獨裁이며 이는 또 黨政政治委員會의 獨裁를 가져 오고 나아가 黨總秘書인 金日成의 1人獨裁를 結果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黨의 獨裁를 은폐하고 1人獨裁를 合法化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中央人民委員會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中央人民委員會의 原型은 54年憲法의 中共最高國務會議, 유고슬라비아의 聯邦執行委員會 (The Federal Executive Council), 東獨의 國家評議會 (Der Staatsrat) 등이라고 하겠다. 中共의 1954年憲法上的 最高國務會議는 中共主席,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委員

長, 國務院總理 및 其他의 關係人員이 參加한다. 이 最高國務會議
는 主席이 必要한 경우에 召集하고 또 最高國務會議의 議長이 된
다. (舊憲法第 43 條)

유고슬라비아의 聯邦執行委員會는 聯邦議會의 한 機關으로서 政治
的, 執行的 機能을 担当하고 있다. (舊憲法第 225 條 1 項), 이 機構의
權限은 1953 年 憲法보다도 縮少되어 있으나 命令制定權등을 가지고
있다. 이 機構外에 聯邦秘書局이 있어 聯邦行政을 担当하고 있다.⁵⁸⁾

1968 年 東獨憲法의 國家評議會 (Der Staatsrat) 는 人民議會
의 機關으로서 人民議會의 幹部會와 같다. 國家評議長은 國家를
代表하며 國家評議會는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고 廢棄한다 (第 66
條) 國家評議會議長과 副議長, 委員은 4 年任期로 選出된다. 國家評
議會는 憲法과 法律을 解釋하고 命令을 制定한다. 國家評議會는
國家의 國防과 安全保障에 關하여 根本的인 決定을 한다. 國家評
議會는 國防委員會의 도움을 얻어 國防을 組織한다. 또 國家評議
會는 最高裁判所와 檢察所의 活動이 憲法과 法律에 合致되는가를
監視한다. 또 一般赦免과 特別赦免을 하며 榮典授與權을 가지고 軍
將星의 階級을 授與한다.⁵⁹⁾ 또 國家評議會는 赦免權을 가지고 있
었다.

1974 年의 東獨憲法은 이 國家評議會의 機能을 合議制로 變更하
였다. 東獨의 人民議會의 任期가 5 年으로 延長되었기 때문에 國
家評議會의 任期도 5 年으로 延長되었다. 國家評議會는 東獨을 國
際法的으로 代表하고 條約을 批准, 公布한다.

그러나 憲法의 解釋權에 관한 權限도 없어졌고 閣僚會議 (Minist-esrat) 의 權限이 強化되었다.

國家評議會制度는 1949年의 헝가리 1952年의 폴란드에서 導入된 것이며 東獨에서는 1960년에 루우마니아에서는 1961년부터 불가리아에서는 1971년부터 導入되었다. 이 機構는 集團的 元首의 機能以外에도 代用議會 (Ersatzparlament) 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機能은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最高會議幹部會가 担当하고 있다:

中共의 新憲法은 最高國務會議制度를 廢止하고 있다. 그 대신에 全國人民代表大會와 그 常務委員會와 國務院의 權限을 強化하고 있다.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는 소聯憲法에 있어서의 소聯邦 最高 소비에트幹部會議과 같은 重要한 機關이다.

이와같이 外國의 國家評議會라던가 聯邦執行委員會라던가 最高國務會議은 主席이나 大統領등의 權限을 制約하기 위하여 最高會議에서 選出된 機構이다. 그런데 北韓의 最高人民會議은 國家主席의 提議에 따라 그 委員들을 拍手로서 選出하고 있으니 이는 完全한 허수아비들이라고 하겠다. 現在의 構成으로 보면 黨政治委員이 거의 다 망라되고 있기 때문에 黨政治局의 獨裁를 合法化하기 위하여 憲法에 規定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最近에 와서 中央人民委員會의 機能弱화가 報道되고 있는데 이는 소聯이나 中共의 制度를 모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 最高人民會議 制度의 比較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는 最高主權機關이라고 하고 있으나(第73条) 이는 非常設機關으로서 1년에 한두번밖에 開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거의 없는 것이 事實이다. 다만 形式的으로는 ①立法權을 가지고 ②憲法을 採択 또는 修正하고 ③國家의 對内外 政策의 基本原則을 세우고 ④主席과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書記長 委員, 政務院總理, 國務委員會副委員長, 中央裁判所長, 中央檢察所所長을 선거 및 召喚하고 ⑤國家의 人民經濟開發計劃을 承認하고 ⑥國家豫算을 承認하고 ⑦戰爭과 平和에 對한 問題를 決定한다.

그러나 副主席을 비롯하여 中央人民委員會委員이며 政務院總理와 國防委員會副委員長의 選舉는 主席의 提議에 의하여 選舉하게 하고 있고 討議案件도 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및 政務院이 提出할 수 있고 代議員도 形式上 提出할 수 있으나 實質的으로는 이들 機關이 提出한 것을 拍手로서 通過시키는 허수아비團體에 不過한 것이다.

法律決定조차도 拳手可決의 方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審議決定權이 없음은 너무나 明白하다.

또 그 常設機關으로서 最高人民會議常設委員會를 두고 있다.

最高人民會議常設委員會는 ①休會中 法案審議決定 ②休會中 法令修正 ③法令解沢 ④人民會議召集 ⑤代議員 選舉 ⑥代議員들과의 事業 ⑦委員會들과의 事業 ⑧地方人民會議 代議員과의 軍事組織 ⑨中央裁判所判事, 人民參審員의 選舉 및 召喚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前述한 바와 같이 그 重要한 權限은 中央人民委員會에 移讓되고 있어 이 機構도 名目上의 主權機關일 뿐이요, 主席의 指示에 따라 立法과 法令解釋을 할 것은 不問可知이다.

따라서 最高人民會議을 統一戰線機構로의 性格變化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一理가 있다고 하겠다. 60) 最高人民會議의 構成은 共產主義國家에서의 議會制政府原則에서 없어서는 안될 機關이기는 하나 事實上에 있어서는 그 集會日數가 짧아 審議權이 없으며 通過機關 내지는 拍手機關으로 變轉하고 있는 것은 共產國家의 通例라고 하겠다. 共產主義國家에서도 主權者인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들의 權益을 代表하는 소비에트가 名目上의 最高主權機關으로 變轉하고 國家權力이 個人에게 集中되는 逆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現象이라고 하겠다. 最高主權機關의 代議員은 勤勞者 農民에 의하여 強制委任된 者로서 選舉人은 이 代表者를 召還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最高會議의 代議員의 任期는 經濟5個年計劃과 步調를 맞추기 위하여 새로운 憲法은 大개 5年으로 延長하고 있다. 北韓憲法은 아직 4年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소聯憲法에서는 이러한 1人獨裁를 清算하기 위하여 最高소비에트의 權限을 強化하고 最高會議幹部會의 權限이 強化되고 있다. 61)

「소聯邦의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은 소聯邦最高會議이다. 소聯邦最高소비에트는 이 憲法에 의하여 소聯邦의 管轄에 屬하는 모든 問題를 解決할 權限을 가진다」(第108條) 「소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소聯邦最高소비에트의 常設機關이며 그 모든 活動에 있어서 소聯邦最高소비에트에 대하여 報告義務를 지며 그 會期와 會期間에 있어서는 憲法이 定한 範圍안에서 소聯邦의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의 職務를 行한다」고 하고 있다.

中共憲法도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最高國家權力機關이다」고 하고 (第20條).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常設機關이며 全國人民代表大會에 責任을 짐과 同時에 活動을 報告한다」(第24)고 하고 있다. 62)

北韓憲法이 最高人民會議과 最高人民會議의 實權을 弱化한 것은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制度의 新設에 따른 것으로 이는 共產主義先進國家의 制度와 矛盾됨으로 金日成死後나 失脚後에는 다시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의 權限強化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新共產主義憲法에서와 같이 代議員의 任期를 5個年計劃과 맞치시키기 위하여 5年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 政務院 制度의 比較

北韓舊憲法의 內閣은 國家主權의 最高執行機關이었으나 新憲法에서는 이름이 政務院으로 바뀌고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執行機關으로 格下되었다. 이것은 中央人民委員會가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으로서 事實上 政策決定權을 独占하고 있기 때문에 政務院은 여기서 決定된 政策을 行政的으로 執行하기 위한 機關으로 權力을 弱化시킨 것이 特色이다. 따라서 政務院은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

의 指導 밑에 事業을 하게 되었다. (第107條)

過去의 內閣은 首相 副首相 相들과 委員會委員長으로 構成되었으나 이번에는 名稱을 變更하여 總理, 副總理 部長들과 그 밖에 必要한 成員들로 構成하도록 하고 있었다. 內閣의 名稱을 政務院으로 바꾸고 首相을 總理, 副首相을 副總理 相을 部長으로 바꾼 것은 中共憲法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大韓民法의 國務會議, 國務總理, 各部長官들의 名稱과도 對稱性을 發見하기 위한 努力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中共의 國務院은 中央人民政府로 最高國家權力の 執行機關이며 國家의 最高行政機關이다. 國務院은 總理, 副總理 若干名, 各部部長, 各委員會主任, 秘書長으로서 構成된다.

北韓의 舊內閣이 가지고 있었던 ①對外關係에 관한 全般的指導權과 ②地方主權機關指導 ③人民經濟 文化生活的 水準向上을 위한 政策決定權과 ④指導 및 人民軍高級將官의 任免 ⑤副首相 및 主要產業機關의 責任者와 大學總長의 任免등의 權限이 中央人民委員會로 移管되고 政務院은 完全한 行政機構로 化하고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이 밖에도 政務院의 部門別執行機關인 部를 없애거나 내을 수 있으며 또 政務院總理의 提議에 의하여 副總理 및 各部長, 그 밖에 政務院隨員들을 任命 및 解任할 수 있기 때문에 政務院은 中央人民委員會의 隸屬的이라고 하겠다.

政務院은 ①名部 政務院直屬機關, 地方行政委員會事業을 指導하고 ②政務院直屬機關을 내오거나 없애며 ③國家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며 그 実行對策을 세우고 ④國家預算을 編成하며 그 執行對策을 세우고 ⑤工業, 農業, 對內外商業建設, 運輸, 通信, 國土管理, 都市經營, 科學教育, 文化, 保健 등의 事業을 組織執行한다. 또 ⑥貨幣 및 銀行制度를 공고히하기 위한 對策을 세우고 ⑦다른 나라와 條約을 맺으며 對外事業을 하고 ⑧人民武力建設事業을 하며 ⑨社會秩序의 維持, 國家의 利益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을 위한 對策을 세운다. 또 ⑩政務院決定, 指示에 어긋나는 國家管理機關의 決定指示를 廢棄한다. (第 109 條)

또 政務院이 가지고 있었던 地方行政에 관한 權限을 大幅 地方에 移讓하여 地方人民會議과 地方人民委員會의 權限을 擴大 強化하였다. 또 道, 直轄市, 市區域, 郡, 行政委員會를 新設하여 地方主權의 行政的執行機關으로 하고 있다.⁶³⁾ (第 128 條)

地方行政委員會는 ①該當地方의 모든 行政事業을 組織 執行하고 ②該當人民會議, 人民委員會 및 上級機關의 決定 指示를 執行하고 ③地方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며 그 実行對策을 세우고 ④地方豫算을 編成하며 그 執行對策을 세우고 ⑤該當地方의 社會秩序의 維持, 國家의 利益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을 위한 對策을 세운다. 또 ⑥下級行政委員會事業을 指導하고 ⑦下級行政委員會의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棄한다. (第 129 條)

北韓憲法이 制定될 때까지는 東獨內閣의 地位도 低下되고 있었으나 1974 年以後 內閣의 地位가 強力해지기 始作하였다.

1974 年의 東獨憲法은 內閣의 地位를 強化하여 「閣僚會議은 人民

議회의機關으로서 独逸民主共和国의 政府이다. 人民議회의 委任에 따라 國家政策의 統一的인 執行을 指導하며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社会的, 國防的課業의 遂行을 위하여 組織된다. 그 業務에 대해서는 人民議會에 責任을 지며 清算의 義務를 진다」(第76条1項)고 하고 많은 業務를 追加規定하고 있다. 또 閣僚會議議長과 副議長과 構成員은 5年의 任期로서 選出된다. 또 閣僚會議에는 議長團을 두고 閣僚會議議長이 閣僚會議와 議長會議을 主宰한다. (第80条) 閣僚會議는 集团的으로 活動하는 機關이다. 고 하여 閣僚會議의 地位를 強化하고 있다.

소聯憲法도 「소聯邦閣僚主義 즉 소聯邦 政府는 소聯邦의 國家權力의 最高의 執行 및 処分機關이다」(第128条)고 하여 그 地位를 規定하고 「소聯邦閣僚會議는 소聯邦最高 소비에트에 의하여 聯邦會議와 民族會議의 合同會議에서 組織된다」(第129条1項) 또 「소聯邦閣僚會議는 새로히 選舉된 소聯邦最高 소비에트에 대하여 그 第1會期에 있어서 辭表를 提出한다」(同条3項) 소聯邦閣僚會議는 소聯邦最高 소비에트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義務를 지고 소聯邦最高 소비에트의 會期와 會期間에는 소聯邦最高 소비에트幹部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이에 報告義務를 진다」(第130条)고 하고 있다.

中共에서도 國務院이 重要한 執行機能을 担当하고 있다. 「國務院은 中央人民政府다. 國家最高權力機關의 執行機關이며 國家의 最高行政機關이다. 國務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活動을 報告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의 閉會期間中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 責任을 지고 活動을 報告한다」(第30條)고 하고 있다. 國務院의 職權은 다음과 같다. ①憲法, 法律, 法令에 따른 行政措置를 規定하고 決議와 命令을 公布함과 同時에 이의 實施狀況을 審査한다. ②全國人民代表大會 또는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 議案을 提出한다. ③各道 各委員會 및 其他 所屬機關의 活動을 統一的으로 指導한다. ④全國地方各級國家行政機關의 活動을 統一的으로 指導한다. ⑤國民經濟計劃과 國家豫算을 編成執行한다. ⑥國家의 利益을 지키며 社會秩序를 유지하고 人民의 權利를 保障한다. ⑦自治州, 縣, 自治縣, 市의 行政區劃을 承認한다. ⑧法律의 規定에 따라 行政要員을 任命한다. ⑨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서 부여한 기타의 權限을 행사한다」(第32條)

內閣의 首相은 과거에는 *Primus inter psres*였으나 現在는 內閣의 指導者의 地位를 가지는 傾向이 늘어나고 있다.

內閣內에 幹部會를 가지는 傾向이 늘어나고 있다. 즉 首相과 副首相들과 몇몇 長官으로써 幹部會를 構成하는 것이 共產主義憲法의 한 特色이 되고 있다.

(3) 裁判所와 檢察所組織의 特色

共產主義憲法下에서는 司法權의 獨立이 認定되지 않는다. 共產國家에서는 最高人民代表大會에서 法官과 檢察官을 選出하고 그 職務를

監督한다.

北韓의 裁判所와 檢察所도 独立的인 司法機關이나 檢察機關이 아니
나고 最高人民會議, 共和國主席 및 中央人民委員會앞에 責任을 지는
隸屬機關이다. (第 142 條, 第 146 條)

舊憲法에서는 「判事는 裁判에 있어서 独立的이며 다만 法令에만
服從한다」(第 88 條). 「檢事는 地方主權機關에 從屬됨이 없이
自己의 任務를 独立的으로 遂行한다」(第 94 條)고 하고 있었으나
新憲法은 「裁判所는 裁判에서 独自の이며 裁判活動을 法에 철저히
依拠하여 遂行한다」(第 140 條)고만 하여 獨立性を 否認하고 「道
裁判所와 人民裁判所는 自己事業에 대하여 該當人民會議앞에 責任진
다」(第 142 條)고 하고 있다. 이것은 檢察의 業務가 「犯罪者와
法違反者를 적발하여 法的責任을 추궁함으로써 勞働者 農民의 主權
과 社會主義制度를 온갖 侵害로 부터 保衛하며 國家, 社會協同團體
財産과 人民의 憲法的 權利 및 生命 財産을 保護하는 것」을 目
的으로 하고 있는 것(第 144 條)과 마찬가지로 法院도 裁判活動을
通하여 北韓에 세워진 勞働者 農民의 主權과 社會主義制度, 國家
社會協同團體 財産과 人民의 憲法的 權利 및 生命財産을 온갖 侵
害로 부터 保護하는 것을 任務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現
象이다. 法院이 社會正義를 실천하고 人權保護를 위한 機構가 아
니라 「모든 國家機關, 企業所, 便宜協同團體 및 公民들이 國家의
法을 正確히 지키고 階級的원수들과 온갖 法違反者들을 反對하여
積極 鬪爭하도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일종의 行政的

強制組織임이 明白하다. 判事도 各級人民會議에서 選舉토록 하고 身分이 保障되지 않고 있어 裁判의 公正성이 保障되지 못하는 것은 當然하다.

最高裁判機關으로서 中央裁判所를 두고 있고 中央裁判所는 모든 裁判所의 裁判事業을 監督한다. (第 141 條) 이 밖에도 道, 直轄市 裁判所와 人民裁判所 特別裁判所가 있다. 檢察事業은 中央檢察所 道, 直轄市, 市, 區域, 郡檢察所 및 特別檢察所가 있다. (第 143 條) 檢察事業은 「中央檢察所가 統一的으로 指導하며 모든 檢察所는 上級檢察所와 中央檢察所에 服從한다」(第 145 條)고 하고 있다.

東獨憲法도 第 4 編에서 社會主義的適性和 司法에 관해서 規定하고 있다. 東獨憲法은 「社會主義社會, 勤勞人民의 政治 權力 그것들의 國家, 法秩序는 正義, 平等, 友愛 및 人間性的 精神에 있어서의 憲法의 遵守와 實現의 基本的인 保障이다」(第 86 條)고 하고 있다.

「裁判은 獨逸民主共和國에 있어서는 最高裁判所 地方裁判所 郡裁判所 및 社會的裁判所에 의하여 法律이 委任한 任務의 範圍內에서 行하여 진다. 軍關係刑事事件에 있어서는 最高裁判所 軍事高等裁判所 및 軍事裁判所가 裁判한다」(第 92 條)고 하고 있다.

裁判所에 있어서의 獨立(第 96 條) 陪審裁判에서의 陪審裁判官의 權利等이 規定되어 있으며 裁判官은 人民代表議會에서 選出하도록 하고 있다. 東獨에서의 法令의 違憲審査는 1968年 憲法에서는 國家評誤會에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74年 憲法에서는 人民議會가 맡아서 하도록 하였다. (第 89 條) 64) 65)

中共의 新憲法도 人民法院과 人民檢察院에 關해서 規定하고 있다. 「最高人民法院,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은 裁判權을 行使한다. 人民法院의 組織은 法律에 의해서 規定한다. 人民法院은 事件의 裁判에 있어서 法律의 規定에 따라서 大衆代表에 의한 陪審制度를 實施한다. (第41條) 最高人民法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짐과 함께 그 活動을 報告한다. 地方各級人民法院은 同級の 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짐과 同時에 그 活動을 報告한다. (第42條3項) 最高人民檢察院은 國務院所屬의 各部門 地方各級國家機關, 國家機關의 勤務員 및 公民이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대하여 檢察權을 行使한다. 地方 各級人民檢察院 및 專門人民檢察院은 法律이 定하는 範圍에서 檢察權을 行使한다. 人民檢察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第43條)고 하고 있다. 中共에서는 違憲法律審査制度는 認定되지 않으며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憲法과 法律의 解釋權을 가진다. (第25條)

소聯憲法은 第7編에서 裁判 仲裁 및 檢察에 關해서 規定하고 있다. 「소聯邦에 있어서는 소聯邦最高裁判所 聯邦構成共和國最高裁判所 自治共和國最高裁判所 地方 州 및 市の 各裁判所 地區人民裁判所 및 軍隊에 있어서의 軍法會議가 活動한다」(第151條) 裁判官과 人民參審員은 選舉되며 法官의 任期는 5年이고 人民參審員의 任期는 2年6月이다. 上級の 裁判所는 5年の 任期로 各各 対応하는 人民代議員소비에트에 의하여 選出된다. 軍法會議의 裁判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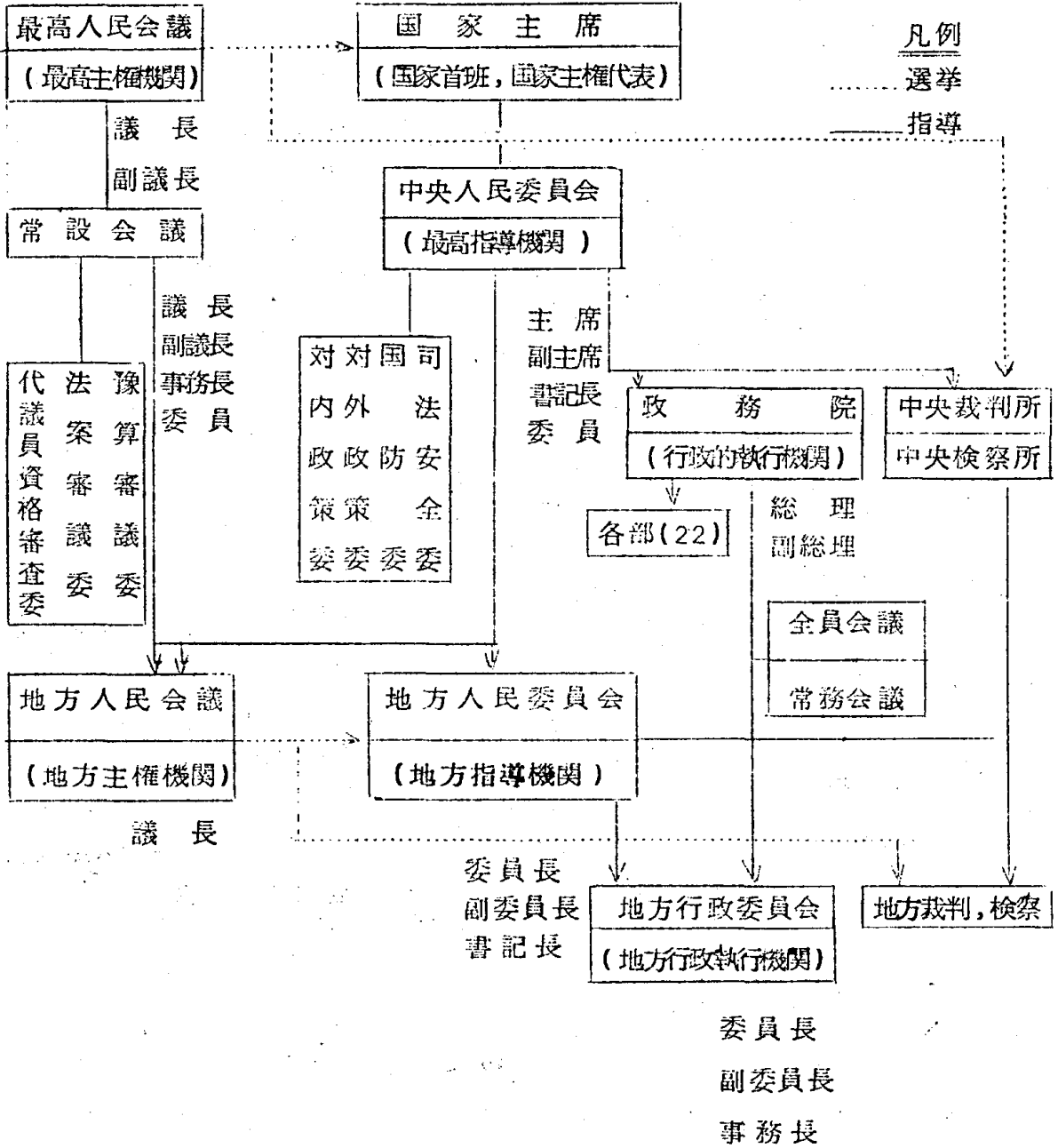
5 年의 任期로 소聯邦 最高소비에트幹部회에 의하여 選出되고 그 人民參審員은 2 年 6 月의 任期로軍勤務員의 集會에서 選出된다. (第 152 條)

國家仲裁機關은 그 權限의 範圍內에 있어서 企業 施設 및 團體間의 經濟的 紛爭을 解決한다. (第 163 條) 소聯邦檢察總長은 소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任命되고 그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 165 條) 소聯邦檢察總長 및 모든 下級檢事의 任期는 5 年이다. (第 167 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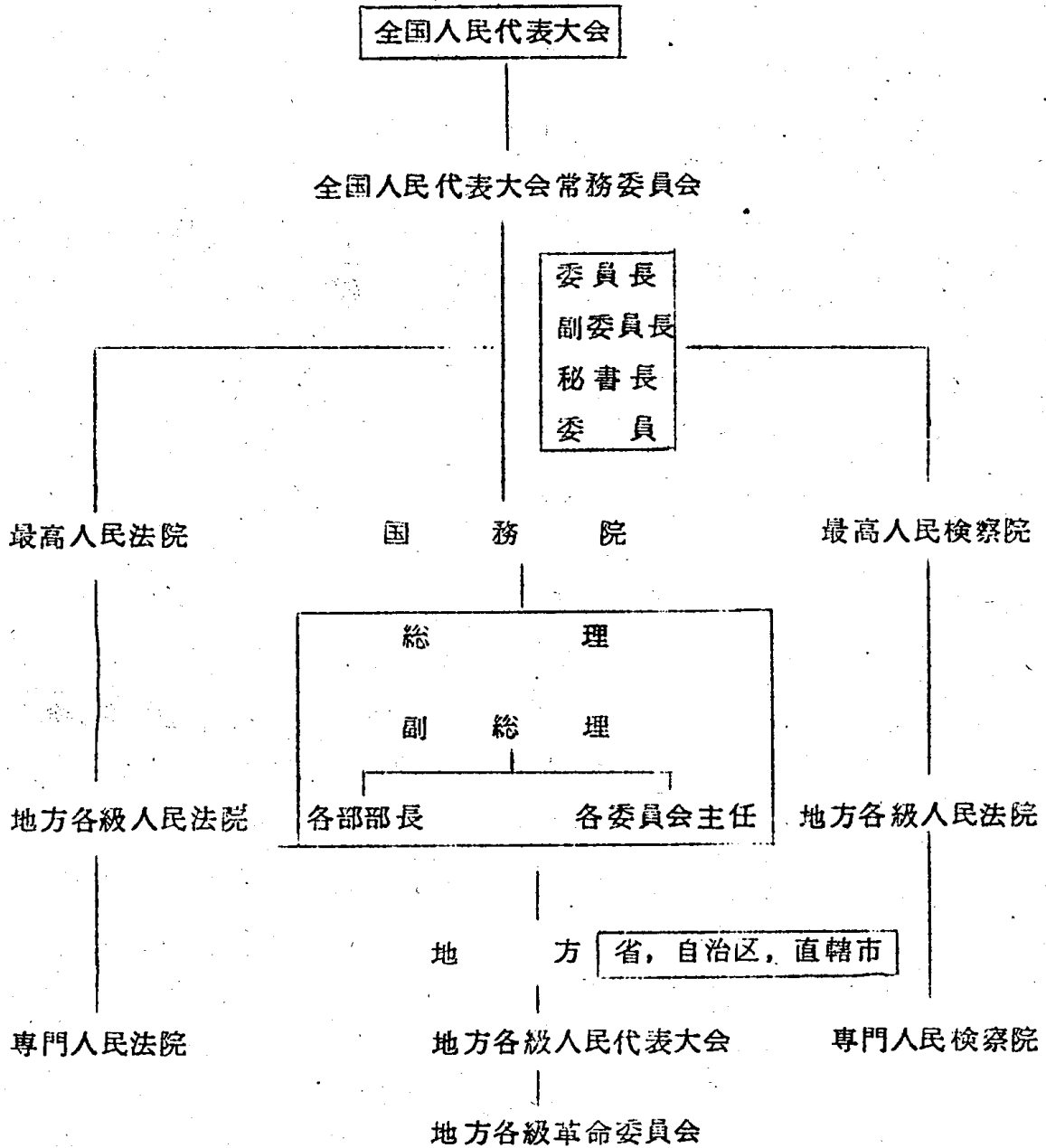
裁判所와 檢察所의 活動에 있어 北韓이나 中共은 獨立性이 稀薄한 대신에 東獨이나 소聯에서는 獨立性이 강한 것 같다. 소聯憲法은 裁判官 및 人民參審員은 獨立이며 法律만에 따른다」(第 155 條)고 하고 있다. 또 弁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가 保障되고 있다. (第 161 條) 北韓憲法은 「裁判은 公開하며 被訴者의 弁護權은 保障한다. 法이 定한데 따라 裁判을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第 138 條)고 하고 「裁判所는 裁判에서 獨自的이며 裁判活動을 法에 徹底히 依拠하여 遂行한다」고 하고 있으나 (第 140 條) 事實上에서는 最高人民會議나 主席 中央人民委員會앞에 責任을 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共產主義國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各國의 國家機關 圖表 >

< 北韓の 權力 構造 >



〈中共の權力機構〉



< 소聯邦의 統治 構造 >

소聯邦最高소비에트

聯邦會議	民族會議
------	------

소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

소聯邦最高法院
聯邦構成共和國最高法院
地方, 州 및 市의
各法院, 自治區法院
地區人民裁判所, 軍
法會議, 國家仲裁機
關

最高소비에트幹部會議長
第1副議長
副議長 15名 (各聯邦構成團代表)
幹部會書記
幹部會員 21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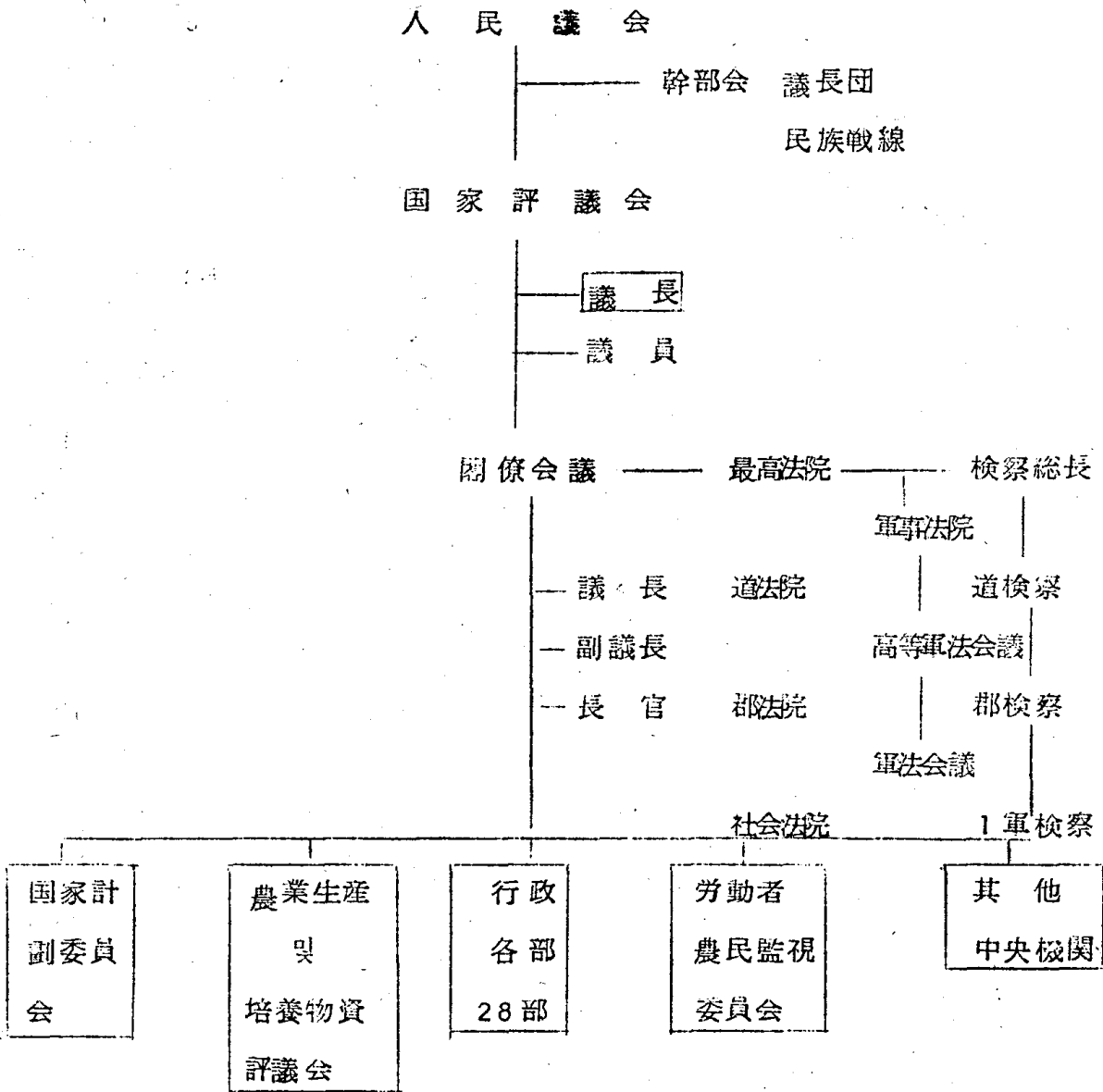
소聯邦檢察總長

聯邦構成
共和國檢察,
自治共和國檢察
地方, 州 및 自
治州의 檢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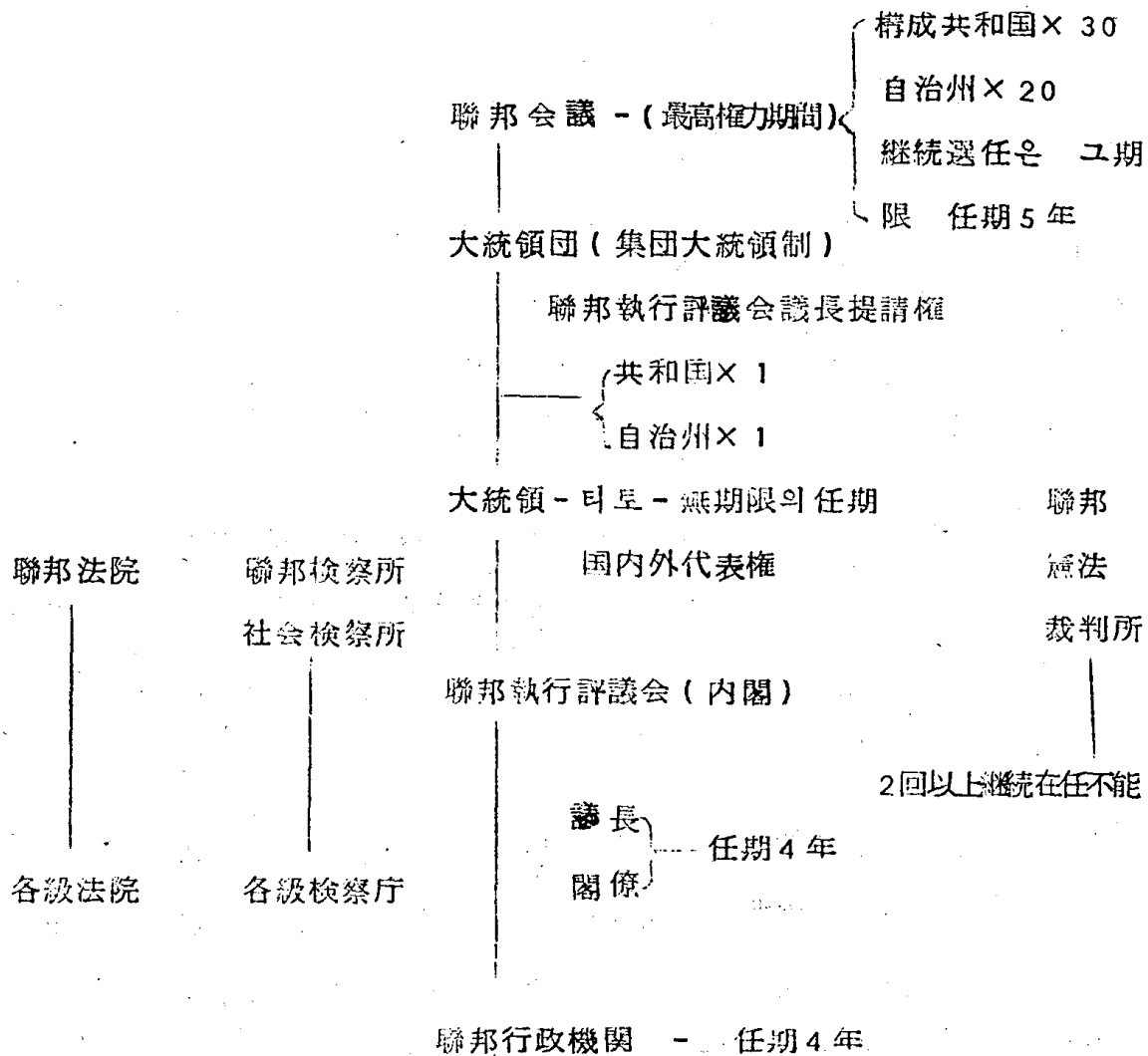
소聯邦閣僚會議
議長

第1副議長 (複數)
副議長 (複數)
長官
國家委員會議長
構成共和國閣僚會議議長

< 東独の 権力 機構 >



< 유고슬라비 統治構造 >



第5節 結 論

以上에서 北韓憲法과 共產圈憲法の 異同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바 그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1. 北韓憲法은 아직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路綫을 維持하고 階級
路綫과 群衆路綫을 強調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開發途上의 社会主
義憲法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中共憲法과 가까우며 發展된
社会主義憲法인 소聯憲法이나 東独憲法の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北韓憲法은 政治的으로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에게 主權
이 있음을 強調하고 프롤레타리아트 独裁路綫을 따르고 있다. 中共
憲法도 이 階級 独裁의 基盤에서 있다. 소聯憲法만이 全人民에게
主權이 있다고 하여 全人民國家를 표방하고 있다.

3. 北韓憲法은 經濟的으로 計劃經濟制度를 採択하고 있으며 工業化
를 指向하고 있는 後進國憲法으로 中共憲法과 같은 段階에 있다고
하겠다. 소聯에 있어서는 計劃經濟에 있어서도 利潤이라던가 物質
的刺戟理論을 導入하고 있는 高度產業化國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4. 北韓憲法の 對外政策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표방하고 있으나
主体思想을 強調하고 好戰的 戰鬪的인 規定을 담고있다. 中共憲法
도 社会主義帝國인 소聯에 대해 挑戰的이다. 東独憲法은 소聯에

密着해 있으며 平和愛護國임을 強調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汎世界的인 軍縮平和造成등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어 여유가 餘 보인다.

5. 文化政策에 있어서 北韓은 共產主義的 新人間을 만드는데 급급한 閉鎖性을 띠고 있는데 對하여 中共憲法은 馬스·레닌主義 毛沢東思想의 指導的地位를 強調하면서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方針을 實行한다고 하고 있다. 소聯憲法은 國際交流까지 強調하고 있어 보다 文化政策이 自由化 되고 있는 것 같다.

6. 北韓憲法의 基本權規定은 自由權이 規定되고 있고 生存權도 規定되고 있으나 아직도 不完全하여 中共憲法과 비슷한 것 같다.

소聯憲法을 비롯한 發達한 社會主義憲法은 生存權保障에 있어 進一步하고 있다. 그 例로는 住宅에 對한 權利 41時間以下의 勞動時間, 適正勞賃의 權利, 醫療保險制등을 規定하고 있다. 東獨憲法이라던가 東歐의 여러 憲法과 유고슬라비아憲法은 이에 속한다.

7. 北韓憲法에는 많은 義務規定을 두고 있는데 法律遵守의 義務, 集團主義的 發揚精神義務, 勞動義務, 財產保護義務, 國家秘密遵守義務, 祖國保衛義務 등이 있다.

中共憲法은 3個義務만 規定했고 소聯憲法은 11個의 義務條項을 두고 있다.

東獨憲法의 義務規定은 權利規定과 複合되어 있다.

8. 北韓憲法은 最高人民會議을 最高主權機關으로 立法權을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그 權限은 主席에 比하여 弱化되고 있다. 특히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의 權限은 大幅 弱化되고 中央人民委員會가 強力한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中共憲法이나 소聯憲法은 議會政府制를 採択하여 人民代表大會나 소聯邦最高소비에트와 그 常務會議나 幹部會議의 權限을 擴大強化하고 있다.

9. 北韓憲法の 共和國主席制度는 共產主義憲法上에는 남은 遺物이다. 티토를 비롯한 一人獨裁形式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東獨憲法에서는 國家評議會議長의 權限을 縮少시켰다. 소聯憲法에서는 主席制度가 없다. 中共憲法에서도 과거의 共和國主席制度는 廢止하고 共產黨主席에게 強力한 權限을 認定하고 있다.

10. 北韓憲法の 中央人民委員會制度는 黨政協議會的인 性格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制度는 外國에 別 類例가 없는 것인데 1954年中共憲法の 모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東歐여러나라에서는 國家評議會制度를 採択하고 있다.

11. 北韓憲法の 政務院은 他國의 內閣이다. 그런데 이것은 最高主權機關의 行政執行機關으로 共和國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 밑에 事業을 한다. 各國 憲法の 閣僚會議보다 훨씬 弱한 權限을 行使하도록 되어있다.

12. 裁判所와 檢察所는 어느 憲法에서나 最高會議에 責任을 지는 非獨立的인 統治構造로 되어 있다. 이것은 北韓憲法에서도 마찬가지다. 社會的適法性의 保障은 소聯憲法이나 東獨憲法에서 잘 保障

되고 있다.

13. 北韓憲法은 南北對話期에 있어서 社會主義建設이 이루어졌음을 宣傳하기 위한 宣傳文書의 役割을 하기 위한 것이다. 北韓憲法은 金日成 獨裁를 成文法化하기 위한 것으로 金日成을 위한 맞춤憲法이다. 金日成死後에는 金日成獨裁의 性格을 벗어나 北勞黨의 優越的 地位가 憲法에 明示될 것으로 보이며 發達된 社會主義段階로 접어들면 蘇聯을 비롯한 東歐憲法과 같이 利潤追求制度가 導入될 것이며 國民들의 欲求解消을 위하여 基本權保障規範이 追加될 것으로 보인다.

14. 東歐의 共產圈憲法에는 違憲法律審査制度가 規定되어 있으나 北韓에는 이에 관한 規定이 없다.

15. 東歐의 共產圈憲法은 國家機關構成員의 任期를 5 個年經濟計劃에 맞추기 위하여 5 年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北韓憲法은 4 年으로 되어있다.

参 考 文 献

〈北 韓 憲 法〉

-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 1975.
- 朴一慶 北韓의 新憲法 - 그 特徵과 基本性格 国土統一
1973 年 10 月号
- 韓東燮 北韓憲法の 基礎, 共產主義問題研究
- 조셉 S. 鄭 北韓經濟体制과 新憲法
- 李源俊 北傀의 勞動政策과 「新勞動法」
- 趙錫俊 北韓의 官僚制와 行政組織, 北韓
- 鄭錫弘 北傀의 소위 社会主義勞動法, 北韓
- 金雲竜 北韓法律制度의 研究, 北韓
- 林建彦 北朝鮮の「社会主義憲法」と その現実 共產主義と
国際政治 (pp37~55) 1977. 7~9 Vol.1.2 162
- 姜求真 北韓 第3卷2号 1977. 社会主義憲法研究 統一政策
- 金雲泰 北韓政權機關의 組織變遷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1973. 第3卷1号
- 張明奉 北韓의 社会主義憲法上の 權力構造에 관한 考察
統一政策 1卷3号 1975.10
- 朴一慶 北韓憲法上の 權力構造 白南憶博士 回甲記念論文集 1976
- 張明奉 共產主義國家의 權力構造에 있어서의 共產黨의 地位,
統一政策 第3卷3号 1977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最高裁判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國家社
會制度, 國立出版社 1956. 國際問題研究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
法. (48年 初期)

교육도서출판사,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憲法 하우서방 1957.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教育省 金日成大學國家法講座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憲法 1960

張明奉 制度的側面에서 본 北韓의 基本的人權 統一政策 76.10

2卷3号

정규서 北韓住民과 居住移轉의 自由 승공생활 76.8

鄭圭瑞 北韓憲法上的 基本權規定 統一生活

鄭鎮圭 北韓住民의 基本的權利義務의 特性 統一生活 75.4

鄭鎮圭 北韓憲法上的 平等權 統一生活

우재승 北韓體制와 基本人權 統一政策 76.9

鄭圭瑞 北韓住民과 양심의 自由, 승공생활 76.6

金致善 北傀新勞動法의 性格, 統一政策 1978. 第4卷2号

70-1-77 北韓法에 대한 소聯 및 中共의 影響 99

鄭圭瑞 北韓에 있어서의 法 승공생활 76.4

金南植 北韓體制的 勞動黨의 存在, 統一政策, 1977. 第3卷2号

안락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強化하기 위한 武器로서의 共和國憲法
科學院 1964. 高法

안락규, 푸로레타리아独裁를 強化하기 위한 武器로서의 共和国憲法,
科学院, 1964. 高法

Edition en Langues Etrangères

Constitution Socialist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ée 1972. 육사

Foreign Language Press. Fukushinra masaa,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O.C. 1975.

경극.

Sejin Kim. Changhyun Cho.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1972.

Koo Chin Kang, An Analytical Study on the North Korean
Socialist Constitution, Korea and World Affairs. A Quar-
terly Review. Vol.2. No.1. Spring 1978.

< 中 共 憲 法 >

外国文出版社 中華人民共和国憲法, 1968. 高亜

中国青年出版社 中華人民共和国憲法, 1967. 高亜, 中東

中国研究所 中華人民共和国憲法 1955. 中国青年出版社, 1955. 中東,

朝統

中華政治幹部学校 国家法教研究室

高橋勇治 浅井敦 共訳

} 中華人民共和国憲法講義

弘文堂, 1960. 国大

国際問題研究所 中華人民共和国憲法. 国際問題研究所 1970. 高法

小岩井 浄 中華人民共和国憲法 中華憲法研究所 1975. 高法

稲子恒夫, 現代中国の法と政治 自由出版社, 1975 国関

野間清他 グロレタリア階級独裁の ために - 中国新憲法の 性格と任務

針生誠吉, 中国政治憲法研究 基本問題 現状分析 -1976

中国研究月報 - 1977. 10.

浅井敦, 中国の 新憲法 No. 663 1978. 5. 1号

유청파, 中共憲法論 法律出版社 1972

구명삭 中共의 司法制度에 관한 研究, 国土統一院 74

中共에 있어서의 法律, 国土統一院 69

Foreign Language Press.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75.

경극

Chün-tu Hsüeh, The New Constitution 1975

Liang-chien Cha, Human Rights under the
Legal System in mainland China

Issues and Studies, Aug. 1977

Der Volksdemokratische Staat in China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des
Staates und des Rechts. Leitfaden Teil II

< 東 独 憲 法 >

- Sorgemidit-Weichert-Riemann-Seml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ck, 2Bde 2.Aufl Berein. Brunner. Einf. i,d. Recht d. DDR. Bede 1980.
- Löw, Die Grundrechte, Verständnis und Wirklichkeit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1977.
- Schulz, Eint, id. Staatslehre Mitteldeutschlands 1968.
- Zieger, Die Organisation der Staatsgewalt in der Verfassung der DDR oon 1968. AÖR Bd. 94,1969.
- Müller-Römer, Ulrichs Grundgesetz,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DR 2 Aufl. 1968.
- Müller-Römer, Dietrich Die Grundrechte in mitteldeutschland.
- Mampel,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72.
- Mampel, Arbeitsverfassung und Arbeitsredst mitteldeutschland. 1966.
- Mampel, Zur Ergänzung und Änderung der DDR. Verfassung. oom 6.9. 1968. ROW. 1975. S.137
- Wiedemann, Das sozialistische Eigentum in Mitteldeutschland 1968.

Schmid, Karin, Entwurf eines neuen Arbeitigesetzluches
für die DDR.

Roggemann, Die Verfassung der DDR 1970.

日本ドイツ民主共和国国民協会, ドイツ民主共和国憲法 1969.

《 유럽 共産主義 憲法 》

Lammich, Neue Institutionen im Verfassungsstaat der sozialistischen Länder Osteuropas, Archiv d. öffentlichen Recht Bd.102 ss.441~469.

Brunner, Neuere Tendenzen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Entwicklung osteuropäischer Staaten, JÖR Bd.23, 1974. S.209ff.

Lammich, Neue Elemente des sozialistischen Konstitutionalismus, Recht in Ost und West(ROW), 1973. S.262ff.

Bilinsky, Neue verfassungsrechtliche Tendenz im Ostblock ROW, 1970. S.99ff

Kovacs, New elements in the evolution of socialist constitution 1969.

Cismarescu, Die verfassungsrechtliche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Republik Rumänien 1965-1975, JÖR Bd.24 1975. S.231ff

＜ 全 聯 憲 法 ＞

谷川良一 ソ連邦の 憲法と 立法, 行政, 司法,

霞ヶ関出版社, 1975. (延東)

チヒクワツゼ他ヴエ ソビエト 国家と 法 霞ヶ関出版社, 1975

匪政

小之内一郎, 藤田勇, ソビエト社会主義共和国同盟 憲法, 国際問題

研究所, 1967

佑田弘雄, ソヴィエト憲法, 上野書店 1933.

배 아바르핀스키, ソビエト憲法 日本創元社, 1953.

ストウチユカ, イヴエート憲法入門, 希望社, 1933.

배 아, 꼬르넨스키, 全聯憲法, 1953. 外,

朝鮮産業労働調査所, 全聯邦憲法, 우리文化社, 1948. 国館

V. Kartashkin, : The Soviet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ffairs, 78.2.

Armstrong, John,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1967.

Marclrenk, M.N.: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Soviet

Society : Principal Emphasis in Scholarly Research :

A survey of the Literature of 1973 ~ 75 (p.68). Soviet

Law and Government (Summer, 1977)

Wesson, Robert, Lenin's Legacy, The Story of the CPSU. 1978.

Brezhnev's post on the New Constitutio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10.26.1977)

Supreme Soviet to Get Draft Constitution Op.cit. p.4.

John Hazard : Foreign Policy and the 1977 Soviet Constitu-
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2.

Robert Sharlet, The New Soviet Constitution, No.2 pp.350 ~
355.

Problems of Communism 1977.10 ~ 11. (韓訳, 金英一, 蘇聯新憲法
分析 批判) 統一政策 1978. 第4卷1号:

Berman, H.g. Justice in the USSR, 1950.

Cohen, Contemporary Chinese Law, 1970.

Klaus Westen, Alezente der sowjetischen Unionsverfass-
ung von 1977.(1978 ~ 9.)

Lane David,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 Towards a
political Sociology of State Socialism, 1976.

Chekharin, E., The Soviet Political System under Develop-
ed Socialism 1977.

USSR. Constitution of the USSR., Progress Publishers 1972.

국판

Progress Publishers Fundamentals of Soviet State Law. 1974.

무진

Höhmman-Seidenstecher, Die sowjetische Wirtschaft im spie-

- gel von verfassung und Verfassungsdiskussion (1978-3)
- Strogovich : On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Soviet
Criminal Procedure.
The Soviet Review, Summer 1977. U.S.A.
- Chkhikvadze, The Soviet Constitution, An Inspiring Example,
International Affairs(78.1) pp.26~33
- Lapenna, Ivo, Human Rights : Soviet Theory and Practice :
Helsinki and International Law No.83. May.1977
- Lebedew-Jakowlew, Die Stalinische Verfassung - die Verfassung
des siegreichen Sozialismus,
Westen, Die Rechtsentwicklung in der Sowjetunion 1976.
(1977-27)
- Meissner,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Sowjetunion seit
dem Tode Stalins JÖR, Bd.22, 1973. S. 101ff.
- Roggemann, Die Staatsordnung der Sowjetunion, Berlin 1971.

〈其他 유럽諸国憲法〉

Peska, Zur gegenwärtigen Verfassungsentwicklung in der Tschechoslowakei, JÖR, Bd.17. 1967. S.295ff

Schultz, Die Tschechoslowakische Sozialistische Republik - ein föderativer Staat, Osteuropa Recht, 1969. S.317ff.

Schultz Die verfassungsrechtliche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Republik Rumänien seit dem zweiten Weltkrieg, JÖR Bd.15, 1966. S.407ff.

稲子恒夫, ポーランド人民共和国憲法, 国際問題研究所, 1969.

Zakrzewski, Die Verfassungsrechtliche Entwicklung der Volksrepublik Polen 1958-1974. JÖR, Bd.24. 195, S.89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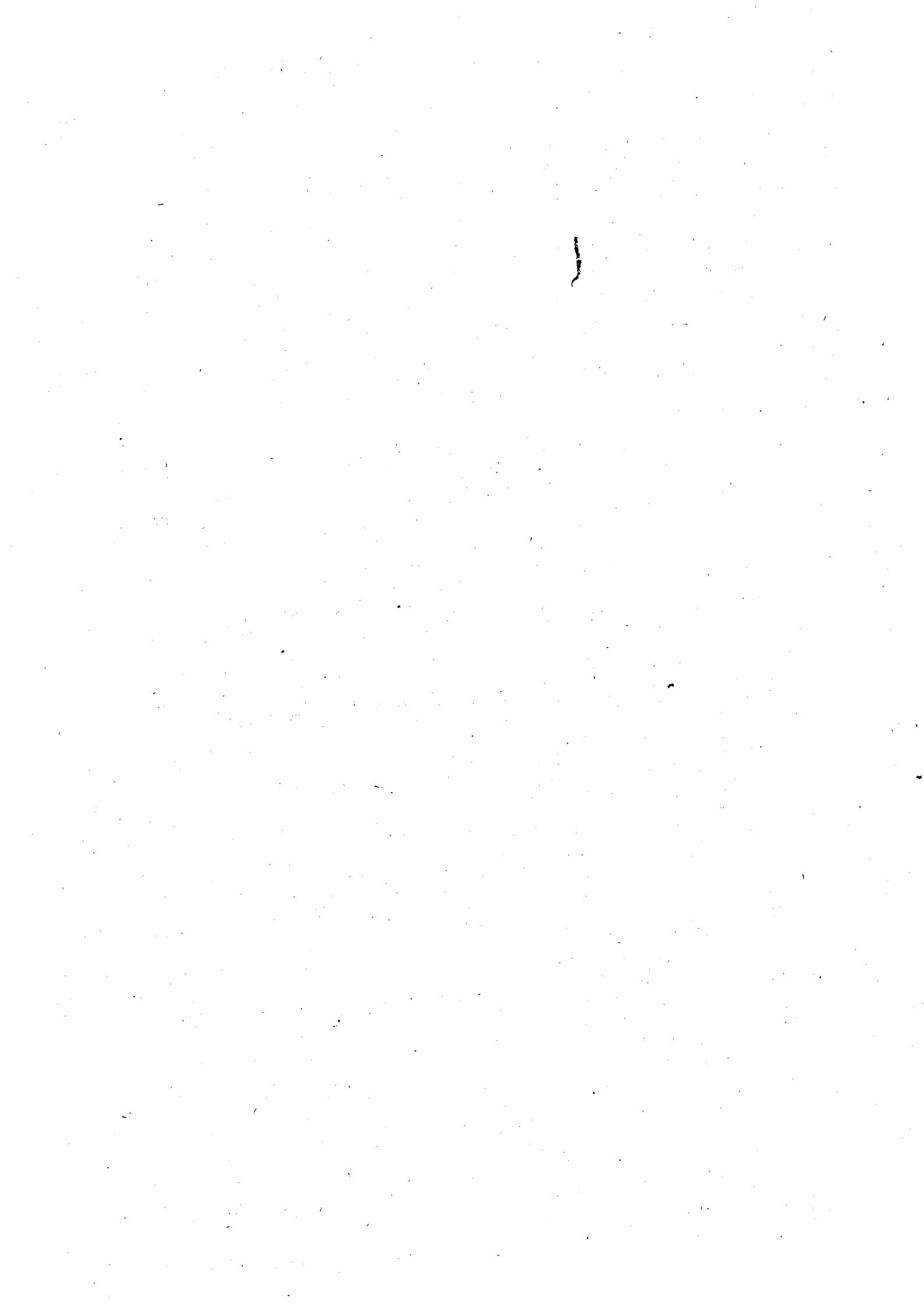
カルデリ, -ゴスラビア, 社会主義的 自立管理の政治制度(上)

世界政治資料, 77.10.

Belgrade, The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1974.

Schultz, Die jüngste Verfassungsform der Sozialistischen Föderativen Republik Jugoslawiens, JfD, 1972. S.7ff.

Schultz, Die neue Verfassung der Sozialistischen Föderativen Republik Jugoslawiens vom 21. Februar Staat, R.F., Commun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1977(Third ed.)



註

- 1) 상세한 것은 金哲洙 共産圈憲法の 特色 国土統一院 南北韓法体制의 比較研究 - 公法關係를 中心으로 - 1972
- 2) 社会主義国家的 憲法, 国会圖書館編 共産諸国の 憲法 1976 参照 社会主義法研究会, 「現代社会主義憲法論」 法律文化社
- 3) 發展된 社会主義憲法으로서는 東欧의 共産主義憲法들이 있다.
상세한 것은 Lammich, New Institutionen im Verfassungsrecht der Sozialistischen Länder Osteuropas, AOR, Bd. 102. S. 441 ff
- 4) 共産主義, 發展된 社会主義의 政治体制 共産主義 1978. 3. 3
프라우다 소련의 新憲法전문, 프라우다 1978. 3. 15
- 5) 이밖에도 1967年度에 制定된 포오랜드憲法, 알바니아憲法, 1974년의 유고슬라비아 憲法이 이에 屬한다고 하겠다.
- 6) 상세한 것은 参考文 에 紹介되어 있는 新憲法解説書 参照. 日書로서는 清岡 雄, 「ソ連新憲法草案の 特色と 中共の 反響」 西南学院大学 法学論集, 10卷 2~4号, 谷川良一, ソ連邦의 新憲法草案について (上) (下), ジェリスト 648号 649号
日森田秋夫, 「ソ連新憲法草案について」法律時報, 49卷 12号 등 参照
- 7) 상세한 것은 소聯憲法에 대한 新華社 者論評, 소聯의 新憲法草案, 海外問題, 第6号 (1977. 9. 20 発行) pp 55 ~ 58
- 8) 北韓의 社会主義憲法에 관해서는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 1975
姜求真 北韓社会主義憲法研究, 統一政策 第3卷 2号 1977. 朴一慶 北韓憲法上的 權力構造, 白南機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76. 張明奉

北韓의 社会主義憲法上の 權力構造에 관한 考察. 統一政策. 1卷
3号 1975.10

9) 1968年の 東独憲法에 관해서는 mampel,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eutschen Republik. 1972
Schulz, Einfulung in der Sfaatslehre Mitteldeutschland
1968.

10) 유고슬라비아憲法에 관해서는 JoR, Bd, 18.

11) 本稿에서는 北韓憲法을 모든 共產国憲法과 比較하여 그 異同을
밝혀야 할것이나 紙面의 制約과 筆者의 能力不足으로 主要共產
国憲法과의 比較만을 하게 되었다. 特히 東独憲法과 소聯憲法
및 中共憲法과의 異同을 中心으로 比較하려고 한다. 그 理由
는 東独憲法, 소聯憲法, 中共憲法이 共產主義憲法으로서 各己의
特色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例를 들면 70년에엔 人民共和國憲法 第7條

13) Proletariat 의 独裁制에 관해서는 柳春生, 마르크스 主義国
家論研究, 社会主義法에 研究. pp.103~166

14) 中共의 国家理論에 관해서는 淺井敦, 「戦後中国の 憲法理論, 法
律時報 49卷7号, 増田福太郎, 中共新憲法 における 国家觀, 法と
秩序, 6卷2号. 野間清: 淺井敦: 近田尚巳 共訳, プロレタリア
階級独裁のために - 中国新憲法の 性格と任務, 東方書店.

15) 상세한 것은 張明奉, 共產主義国家的 權力構造에 있어서의 共產
党的 地位 - 共產党独裁理論의 体系的展開, 統一政策, 1977.

第3卷3号. pp. 236~252

金裕南 共産社会에서의 党的 役割 比較共産主義, 自由아카데미出版部 1978. pp. 139 ~ 164

Gyula Jozsa, Die Herrschaftsfunktion des Parteiapparatz der KPdSU, 1978.

Borys Lewytzkyi, Das Sowjetische bürokratische Herrschaftssystem, Lenkungsorganisation der KPdSU 1978.

16) K.Westen, die Kommunistische Partei der Sowjetunion und der Sowjetstaat, Köln 1968, Laszlo Revesz, Kommentar zum Statut der KPdSU, Bern 1973.

17) 폴란드에서는 民族統一戰線, 東独에서는 民族戰線, 헝가리에서는 祖國戰線은 모든 社会的諸力の 聯合体로서 認定된다. 이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의 祖國戰線과 유고슬라비아의 勤勞者社会主義 聯盟등은 會員으로써 構成된 社会的大衆組織의 地位를 가진다. 체코슬로바키아의 民族戰線과 루마니아의 社会主義的 統一戰線은 個人會員을 가지지 않고 団体会員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18) 实际上에 있어서는 北韓에서도 勞動党的 独裁가 行해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상세한 것은 張明奉 前 論文과 朴一慶, 北韓 憲法上的 權力構造, 白南憶博士回甲記念論文集, 金南植, 北韓体制의 勞動党的 地位, 統一政策 1977. 第3卷2号

17) 北韓科学院 經濟法學研究所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国家社会 体制, 在日朝鮮人科学者協會 社会科学部門共政部會誌 1966, p. 113

- 張明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的 權力構造에 관한 考察, 統一政
策 第1卷3号 pp. 216
- 20) 프롤레타리아獨裁와 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를 固守하다. 勞動新
聞. 1977.2.4 張明奉 前掲書. p. 216
- 21) 東歐憲法에 있어서의 國家構造에 관해서는 Lammich, a. a. O. S
454 ff
- 22) 상세한 것은 mampel, a, a, O, S, 81718 參照.
- 23) 稻子恒夫, 社會主義 權力集中制 - ソヴェト連邦の ばあい -
社會主義法 の 研究. pp. 167 ~ 240.
- 24) 東獨憲法과 루마니아 憲法이 社會主義的 國際主義를 規定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社會主義的國際主義를 政治體계의 主要原
則이라고 하고 있다.
- 25) 상세한 것은 mampel, a, a, OSS. 202 ~ 212
- 26) 東歐憲法에 있어서도 外交政策의 目的과 原理에 관해서 상세
하게 規定하고 있다. 특히 소聯과의 關係를 憲法에 規定한
것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東獨이 있으며 1976년에
改正된 폴란드憲法을 들 수 있다. 社會主義國家間에는 相互援
助(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協同(폴란드), 兄弟的共動勞力(루
마니아) 親友的協同(체코슬로바키아) 多方面的인 協同(東獨)
과 友誼가 經조되고 있다.
- 27) 社會主義的適法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東歐憲法은 行政의 合法
性保障과 法律의 合法性保障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Schultz, Die geriditliche Kontrolle von
 Verwaltungsakten in den Sozialistischen Stauten, ROW,
 1975. S.241ff, Lammich, Die gerichtllche Kontrolle der
 Verwaltung in den Sozialistischen Verfassungssystemen,
 Verwaltungsarchiv, 1973. S.246ff, Siemienski,
 Das Problem der Kontrolle der Verfassungsmabigkeit von
 Gesetzen (poln) 1972.

- 28) 社会主義的適法性에 관해서는 社会主義法研究会, 레-닌의 국가와
 法の理論 1971. 루베르트 라이히, 알쿠스主義法理論
 - 歴史上の及び今日の 諸論争と 諸傾向 比較法 1977
 Berman, What makes "Socialist Law" Socialist ?
 Problems of Communism. Hazard, Commanists and Their Law
 A Search for the Common Core of the Legal Systems of
 the marxian Socialist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 29) 상세한 것은 mampel, a,a,O.S. 258f
- 30) 東歐에 있어서의 經濟와 政治에 관해서는 Klaus von Beyme,
 Okonomie und Politik im Sozialismus. 1975. 參照
- 31) 中共憲法은 精神的獎勵를 主로하고 物質的獎勵를 縱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아래의 修正主義批判의 姿勢
 를 堅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mampel, a.a,OS,S,311 ~ 369

33) 상세한 것은 mampel, a, a, O, S, S, 370 ~ 386

34) 상세한 것은 mampel, a, a, O, S, S, 599 ~ 618

東独憲法 第24条 「独逸民主共和国의 各市民은 勞動의 權利를 가진다. 各市民은 職場을 求하는 權利, 그리고 社会的 必要와 個人的 技能資格에 따라서 職場을 自由로히 選擇할 權利를 가진다. 各市民은 勞動의 質과 量에 相應한 賃金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男子와 女子, 成年과 青少年은 同等한 勞動에 있어 同等한 賃金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35) 北韓의 勞動政策에 관해서는 金致善, 北傀新勞動法の 性格, 統一政策 第4卷 2号, 1978.

36) 環境權에 관해서는 金哲洙, 環境權, 公法研究 第6集 參照 또 徐元, 環境行政機構, 公法研究 第6集

37) 環境問題에 관해서는 環境法學會 심포지움 參照 또 mampel, a, a, O, SS, 387 ~ 407 參照

38) 環境保護에 관하여 가장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는 共產主義 憲法으로는 유고슬라비아憲法을 들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憲法은 第11節에서 人間環境의 保存과 改善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2條에서는 健全한 環境에 대한 權利를 強調하고 있다.

39) 소聯憲法은 第19條2項에서 「國家는 社會의 社會的 等質性的 強化 즉 階級的 差異, 都市와 農村 및 精神的 勞動과 肉體的 勞動과의 間的 本質的 差異의 払拭 및 소聯邦에 있어서의 모든

民族의 全面的인 發展 및 接近을 助成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北韓憲法의 第 25 條와 비슷하다.

- 40) 상세한 것은 mampel, a, a, O, S, S, 455 ~ 481
- 41) 分断國家의 憲法의 統一條項에 관하여는 金哲洙, 分断國憲法과 統一問題, 서울大學校法學, 第 18 卷 1 號, 1977.
- 42) 상세한 것은 金哲洙, 共產國憲法의 特色, 國土統一院, 南北韓法 體制의 比較研究 - 公法關係를 中心으로 - 1972. pp. 7 ~ 17
參照 Low, Die Grundrechte Verständnis und Wirklichkeit in beider Teilen Deutschlands, 1977
- 43) 東歐憲法의 基本權에 관해서는 G, Brunner, Zur Wirksamkeit der Grundrechte in Osteuropa, Der Staat 1970. S. 187ff
- 44) 北韓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에 관해서는 張明奉, 制度的側面에서 본 北韓의 基本的人權, 統一政策 2 卷 3 號 76.10.
鄭鎮圭, 北韓住民의 基本的權利義務에 特性 統一政策, 75.4.
- 45) 소聯에 있어서의 基本權에 관해서는 K. Werten, Die Rolle der Grundrechte in Sowjetstaat, in Maurach-Meissner (Hrsg.) 50 Jahre Sowjetrecht, Stuttgart 1969
S. 88ff, Hg, Uibopuu, Die menscheniechens pakte der Vereinten Nationen im Staatsrecht der UdSSR, Ustduroper Recht, 1975, S. 1ff.
- 46) Ronrt Sharlet, The New Soviet Constitution, Problems of Communism, 1977, 10 ~ 11 月

- 47) 상세한것은 金哲洙 共産圈憲法の 特色, 国土統一院, 南北韓法体制의 比較研究 - 公法關係를 中心으로 - 1972.6 pp 19~27
- 48) 議會政府制 (Versammlungsregierung) 에 關해서는 Lowenstein Verfassungslehre. 參照 韓訳 金箕範 現代憲法論 教文社
- 49) 상세한 것은 Studenikin Sowjetisches Verwaltungsrecht SS. 94 ~ 97 參照
- 50) 北韓의 旧憲法の 統治機構에 關한 文獻으로서는 金雲竜 「北韓」憲法秩序의 理論과 實際, 北韓法律体系研究, 1972 所收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1964
韓東燮, 北韓憲法の 基礎, 北韓法律行政論叢 第1集 (1970)
Scalapino & Lee, Communism in Korea, 2vo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Se-jin Kim Chang-Hyun Cho ed.,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2
- 51) 北韓이 統治体制에 關하여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科学院 經濟法學研究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 社會体制, 日本評論社, 1966
李文永, 北韓行政權力의 變質要因에 關한 研究, 北韓法律行政論 第1集 (1970) 金雲泰, 北韓政權機關 (行政機關) 의 組織變遷에 關한 研究, 統一政策, 1977. 第3卷第1号 pp.200 ~ 232

52) 岩村三扶,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家機構人民民主主義의 研究(上卷)

p.10213

丘秉朔, 中華人民共和國憲法研究 - 統治体制의 動態와 그 法理

1976. 3.

53) 상세한 것은 mampel, a, a, O, S, 894ff

54) 상세한 것은 丘秉朔, 中華人民共和國의 制定憲法研究 文鳩柱博

士回甲論文集 p.51

55) 東歐憲法の 國家元首에 관해서는 Lammich, Die Institution

des Obersten Präsidiälorgans und des Staatspräsidenten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Europas ein verfassungs-

rechtlicher Vergleich,

ROW, Heft. 5. 1977 參照

56) 東獨憲法에서도 國家評議會의 副議長制度가 規定되고 있다.

57) 吉成喆, 北韓의 새로운 權力構造分析, 國際問題 1973.2 p.61

58) 유고슬라비아憲法の 聯邦執行委員會에 관해서는 Krbek, Die

Verfassung der Sozialisten Föderativen Republik

Jugoslawien vom 7.4. 1963.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Bd. 13. SS. 243 ~ 324 특히 p.277 ~ 279 參照

59) 東獨의 國家評議會에 관해서는 mampel, Die neue

Verfassungsordnung in Mitteldeutschland JoR, Bd, 18

SS 333 ~ 466

Mampel, Herrschaftssystem und Verfassungsstruktur in

Mitteldeutschland, Köln, 1968 Mampel,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72

- 60) 吉成喆 前掲論文 p.61 (2559),
- 61) 소聯의 最高會議制度에 관해서는 金子道雄 ソ連の議會 田畑忍編
議會制 民主主義の研究 1977. pp.193 ~ 206
- 62) 中共의 75年憲法下の 全國人民代表大會에 관해서는 度辺久丸,
中國の 全國人民代表大會 田畑忍編 議會制民主主義の研究, pp.207
~ 215 浅井敦, 社會主義憲法における立法機關 現代法 p.112
以下 78年憲法에 관해서는 稻子恒夫, 中國の新憲法「中國研究」
第91号 p.18 以下
- 63) 北韓의 地方行政組織에 관해서는 金泰瑞, 北韓의 地方行政組織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1977. 第3卷第1号 pp.233 ~ 263
- 64) 東歐憲法の 違憲法律審査制度에 관해서는 Lammich AoR Bd, 102
S, 464ff
- 65) 憲法裁判機構를 두고있는 東歐憲法으로는 1963年の 유고슬라비
아憲法과 1968年の 체코슬로바키아憲法の 規程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憲法裁判機構를 두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國民議會의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法審査를 하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國家評議會에서 法律의 違憲審査를 하고 있
다.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titutions of North Korea and of Other Communist Countries

1. Position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other Communist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s of Communist countries, originated from the 1917 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have been changing their shape in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via People's Democratic Constitution after the World War II. North Korea's 1972 Constitution also declares that the basic law is a Socialist one.

The Socialist Constitution comprises those of both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he most typical of the former is the 1978 Constitution of Communist China and that of the latter is the Soviet Union's Constitution which was amended in 1977.

Advanced Socialist Constitution advocates a society where happiness of all people is secured, gape in classes and social strata have been narrowed, and labor's positive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substantial rights and freedom of the people are guaranteed.

It also advocates the state of the whole people.

The Constitution of developing Socialist countries admits class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Therefore, it does not fully support the people's freedom and the right to live.

Considering that North Korea's 1972 Constitution maintains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and that it places high emphasis on the class line as well as the general line, we can understand that the North Korean basic law still remains a developing Socialist Constitution.

2. Comparis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of other Communist Constitutions.

North Korean Constitution stresses the point that the sovereignty is defined as emanating from the workers, peasants and soldiers and it centralizes the political power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 organ representing the working people. It is a common phenomenon that various Communist Constitutions in the world have adopted such "principle of democratic centralism" and the scheme of parliamentary government. Provided that the Soviet Union's Constitution has sublated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and advocates a popular governm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has adopted the principl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stressed on the Socialist legality, as well, which is a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e instruments of production are no longer subject to private ownership and are to be owned by the state as well as by cooperative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 Constitution envisages that cooperative property will eventually be phased out, in favor of the property of all the people. It also emphasized the role of the country to eliminate the class distinction between the workers and the peasants and between the hard labor and the light one.

The Constitution of Communist China prescribes that the means of production shall be owned either by the Socialist general people or by the Socialist working people. The ownership by the latter is called "collective ownership." The Soviet Union's Constitution provides the ownership by the state and that by the cooperatives, both of which are inviolable.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did not accept such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as stipulated in those of the Soviet Union, Communist China and East Germany.

Also stressed by North Korean Constitution are "planned economy" and the abolition of taxation. The abolition of taxation has not been accepted by any other Constitutions. It is probable that North Korean had presented the tax abolition as a propaganda password.

North Korea i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that builds up "new Communist men." The 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stresses moral education underlying that "fre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s is a prerequisite of free development of the whole people." The Communist Chinese Constitution accepted the guidance role of Marxist-Leninist view as well as the Maoism under the slogan of "Let the hundred flowers bloom, let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contend." It also stipulates that the country shall foster development of the arts, progress of the science and prosperity of the Socialist culture.

3. Comparison of the Basic Rights Provision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of other Communist Constitutions.

North Korean Constitution prescribes comparatively detailed provisions concerning basic rights of citizens. It spells out the basic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which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f "one for all and all for one," and on "the Socialist principles of work according to the ability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ork don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that it enumerates as many duties as rights. Citizens are urged to observe the laws and orders, to display "a high degree of collectivist spirit," and to esteem the property owned by the public. This kind of the basic rights provisions is modelled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The 1978 Constitution of Communist China still remains the same kind as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has taken a step forward as its people enjoy extended basic rights, i.e., the right to largely subsidized housing, the right to wages over minimum level, the right to 41-hour workweek and the right to complete free health service. Yugoslavian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housing,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social safeguard, the right to environment, the right to 42-hour workweek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service.

4. Comparison of the Organizational Provision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of other Communist Constitutions.

North Korean Constitution has set fort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its Standing Committee. However, the power of both organizations has been weakening, because some of their function was transferred to the President and to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which had been newly established under the 1972 Constitution. The Cabinet has changed its name into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reducing its function.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is modelled on the 1954 Constitution of Communist China. The 1978 Constitution of Communist China, however, does not provide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but the Chairma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the head of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and its National Defense Committee,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directly guides the whole armed forces in the country in the capacity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whole armed forces. In Communist China, the Chairma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trols over the armed forces.

North Korean Presidency seems to have been modelled on those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It is also probable to

have been modelled on Yugoslavia's President Tito, Vietnamese President or East Germany's Chairman of the Council of State under its 1968 Constitution. With the 1974 Amendment, East Germany weakened the power of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State. Communist China has erased the Presidency in the Amendments in 1975 and in 1978.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s Presidency established for the idolization of Kim Il-sung will fade away along with his passing and that the rest of the North Koreans will adopt the collective leadership, which is a common characteristic of Communist Constitutions.

North Korea's Central People's Committee is likely to have been based on the East Germany's Council of State under its 1968 Constitution.

5. Conclusion

The 1972 Constitution of North Korea has taken the role of propaganda broadside to advertize the building of Socialism has been completed amidst then on-going South-North dialogue. North Korea, however, is little removed from the underdeveloped Socialist Constitution. Thus,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far from the Soviet Union's but rather close to the Communist China's. After Kim Il-sung dies, the Constitution will be

apparently removed from his dictatorship and will spell out the superior position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When North Korea reaches more advanced Society, such basic rights provisions a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s of the Soviet Union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be added to its present basic law.